

석사학위논문

제주 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고성만

2005년 12월

제주 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지도교수 조 성 윤

고 성 만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고성만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5년 12월

Form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Jeju
4·3 and Political Action

Koh, Sung Man

(Supervised by Professor Cho, Sung Yo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5. 12.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이전 연구 검토	4
3. 이론적 배경	7
4. 연구의 대상과 방법	10
II. 지배 담론으로서 ‘폭동론’	13
1. 지배 담론의 형성	13
2. 폭동 담론의 정치적 작용 :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18
III. 저항 담론으로서 ‘항쟁론’	23
1. 저항 담론의 형성	23
2. 「이제사 말함수다」가 선택한 4·3	27
IV. 합의 담론으로서 ‘양민학살론’	33
1. 합의 담론의 형성	33
2. 수난사적 맥락 속에 가려진 ‘폭력의 역사’	43
V. 합의 담론의 발전된 형태로서 ‘화해와 상생론’	46
1. 화해와 상생 담론의 형성	46
2. 선택된 ‘4·3희생자’, 선택된 ‘4·3의 역사’	51
VI. 결론 : 제주 4·3 담론의 사회학적 분석	57
【참고자료】	64
【Abstract】	75

<국 문 초 록>

제주 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이 논문은 4·3 담론이 어떠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누구에 의해 주도되어 형성됐고, 담론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치적 작용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4·3이 진압된 이후 극우 반공 체제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구조 속에서 민주화 이행 시기를 거쳐 ‘화해와 상생’이 강조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4·3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왔는가. 이 연구에서는 1989년의 제1회 4·3추모제를 통해 민주화 단체들이 조직화 되고, 1994년의 ‘합동위령제’, 1999년의 4·3특별법 제정, 그리고 2003년의 대통령 사과와 같은 현상들을 담론이 전환되는 중요한 과도기적 지점으로 인식하고 4·3 담론을 다음과 같이 ‘폭동론’과 ‘항쟁론’, ‘양민학살론’, ‘화해와 상생론’으로 구분하게 된다. 시기별로 전개됐던 4·3 담론은 그것의 사회적 표현 양식이나 상징체계를 통해 접근 가능한데, 각각의 담론적 표현물들을 통해 담론의 ‘주체’, ‘정치’, ‘효과’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담론 분석을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 담론 주체는 자신들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조직적으로 담론을 전개시켜 나가게 되는데, 현실의 담론 공간에서 투쟁하거나 타협하는 양상을 통해 실제적인 세력 관계에 대해 특정한 ‘효과’를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시키게 된다. 역사적 사실의 경우, ‘담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담론의 정치’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선택된 ‘사실’ 혹은 배제(거부)된 ‘사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동일한 객관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담론 주체가 작동시키는 정치적 작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사하여 부각시키거나, 거부하여 배제시켜버리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4·3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 4·3 담론에 대한 분석은 담론의 정치적 작용으로 인해 선택된 혹은 배제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여 밝혀내고 담론 구조 속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담론적 서열화를 해체시킴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사회의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질서를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담론적 설득력을 통해서 권력에 대한 민중의 동의를 창출하는 방식을 작동시켰다.(조희연 편, 2003) 그러나 지배화된 권력 구조 속에서도 대항 담론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정점이 바로 1987년 6월항쟁이다. 지배하는 세력은 계속 지배하려 했고, 민주화세력은 지배세력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지배’와 ‘저항’이라는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정주신, 2004, p.67) 그 과정에서 민주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에 의해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경험해야 했던 제주 4·3도 6월항쟁 이후에야 비로소 사회적 논의를 조직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정권이 ‘반공’을 국시(國是)로 설정했고, 그들 권력에 기생했던 수많은 우익 권력들이 손과 발이 되어 4·3의 사회적 소통을 차단시켜왔기 때문이다.

1)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법률 제 6117호, 이하 4·3특별법)은 ‘4·3’을 ‘제주4·3사건’으로 규정하고,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4·3’은 ‘사건’ 이외에도 ‘항쟁’, ‘폭동’, ‘무장 봉기’, ‘민중 수난’, ‘양민학살’, ‘사태’, ‘반란’ 등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인식 주체의 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리를 배경으로 정명(正名)임을 자처했고, 투쟁을 통해 갈등하고 대립하며, 때로는 전략적으로 ‘합의’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4·3’을 수식했던 각각의 표현들은 담론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구성물이자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를 달리해 왔다. 황상익(1999, p.304)은 ‘4·3’이라는 명칭에 대해 “잠정적인 것이다. 즉, 실상과 성격에 걸맞은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의 한시적인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진상규명 등 지속적인 작업과 그 진실에 합당한 조치 등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현재진행형’의 명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분석의 객관적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서 ‘4·3’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4·3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4·3은 공적 영역으로(양정심, 2000, p.272), 비합법적 영역에서 점차 합법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나간채 외, 2004, p.17). 가장 큰 이유는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 혹은 ‘합법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3은 여전히 많은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²⁾ 오늘날의 4·3을 진단하는 데에는 어떠한 접근 방식이 유효할까.

이를 위해 이 연구는 4·3 담론에 주목하고, 4·3이 진압된 이후 극우 반공 체제가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민주화 이행 시기를 거쳐 ‘화해와 상생’이 강조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4·3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왔는가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4·3 담론이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에 의해 주도됐고, ‘담론의 효과(effects of discourse)’를 위해 어떠한 ‘담론의 정치(politics of discourse)’³⁾가 작동되어졌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담론 주체는 그들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조직적으로 담론을 전개시켜 나가

2) 일례로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4·3유족회)가 2005년 7월14일부터 26일까지 4·3 유족회원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8%가 현재의 ‘4·3 해결 성과’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유족회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이나 희생자 선정 이후 달라진 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유족들의 입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4·3 희생자 선정, 4·3 평화공원 조성, 4·3 후유장애인의 의료지원금 산정, 4·3 피해자에 대한 보·배상 등 관련 당사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이하 4·3 도민연대)가 2005년 3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구형무소 수형 희생자 신고인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3은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라 희생자 신고, 희생자 결정, 평화공원 조성,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4·3 문제 해결의 성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4%가 ‘불만족’하다고 밝혔다. 4·3 도민연대는 ‘수형인을 별도로 취급하는 희생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방불명의 실상을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압매장지 발굴 등이 진척되지 못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됐다’고 진단했다.(4·3 도민연대, 2005)

3) 김영범(1998, pp.191~192)은 ‘기억의 정치’를 ‘집합 기억의 역사화나 무화(無化) 과정에 개입하는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힘들의 역학관계와 그것을 둘러싼 담론적 실천의 기제를 일괄하는 개념인 것’으로 정의했다. 이 점에서 ‘기억의 정치’는 ‘담론의 정치’에 수반된다는 명제가 가능해진다. ‘기억의 정치’가 주제, 대상, 전략, 효과 등을 파악하는 총체적인 담론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 된다. 또한 현실의 담론 공간에서 투쟁하거나 타협하는 양상을 통해 실제적인 정치 사회적 관계에 대해 특정한 ‘효과’를 생산하게 된다. 4·3의 여러 담론 중에서 현재까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폭동론’은 군·경과 우익 단체 등 4·3을 진압했던 핵심 세력들이 중심에 있는데, 반공 정치와 공포 정치를 통해 현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함으로써 담론적 효과를 얻게 된다.⁴⁾ 대항 담론으로 형성됐던 ‘항쟁론’ 역시 민중 사관에 입각하여 4·3을 해석함으로써 지배 담론의 현실 기득권에 도전하고 폭동 담론 하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됐던 항쟁의 역사를 복원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담론적 질서’⁵⁾가 수반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시대적 추이를 염두에 두고 각 시기별로 4·3 담론은 어떠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담론 주체에 의한 ‘담론의 정치’를 주목하고, 어떠한 정치적 작용을 통해 ‘효과’를 유도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가 오늘날의 4·3 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하는 시도인 만큼, ‘화해’와 ‘상생’이 시대 구호로 주창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최상층부에 위치한 국가가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위의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일련의 ‘화합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는 오늘날 어떠한 4·3의 역사를 선택하여 유포시키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4) 지배 체제의 재생산과 관련한 지배 담론의 속성은 다음의 연구에서도 제시된다. “지배 담론의 경우 지배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양면적인 효과를 갖는데, 지배 블록 내의 다양한 분파를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에 대한 민중불복을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조희연 편, 앞의 책, p.37), “지배담론은 정치적 동의를 획득과 대중동원 등을 통해 지배체제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이영환 편, 2003, p.11)

5) 이진경(2002, p.347)은 ‘담론적 질서’를 ‘담론 자체에 권력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담론 자체가 권력에 의해 작동하며 정당화된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2. 이전 연구 검토

1990년대 이후 4·3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물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다음의 연구들은 담론의 사회적 구성물인 언론, 선거, 학술 연구, 문화운동 등에 주목하고 있다. 김광우(1994)는 1948년 4월 3일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매해 4월과 5월에 보도된 일간지에서 4·3과 관련한 기사를 분석했는데, 정치 사회적 흐름과 언론의 4·3 논의 수준이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석준(1997)은 4·3을 절대 변수로 설정하여 1948년부터 1992년까지 제주 사회의 선거사를 분석했는데, 결국 4·3으로 인해 고착된 정치적 정체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진취적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1999)은 정치인들의 발언과 언론 보도, 연구 성과 등에서 보여지는 4·3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제는 제주민에게 화답할 차례’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담론과 현실의 정치 사회적 역학관계를 설명했던 연구였다.

양정심(1998)과 박찬식(1999)은 4·3 관련 연구 성과들을 통해 담론 분석을 시도했다. 양정심은 4·3 항쟁의 주체, 중앙당·항쟁 지도부와 제주도민의 관계, 그리고 4·3 항쟁의 원인과 성격 등을 통해 접근했는데, 그러나 “그간의 연구 성과물들이 1980년대의 학술적 성과를 뛰어 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레드콤플렉스(Red Complex)가 소장학자들의 4·3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식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격변 과정은 그대로 4·3 연구에도 투영되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4·3 진상 규명의 역사를 정리했다.

최근에는 ‘기억의 정치’ 개념을 통해 기억 주체의 현재적 관심 또는 기억 행위의 현재적 맥락에 따라 ‘기억이 재구성된다’는 논지가 발전됐는데, 이를 문화운동과 접목시켜 접근한 연구가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나간채 외, 2004)이다. 이 연구에서는 종래의 지배담론과 관제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4·3

문화 운동을 통해 저항 담론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위령 의례(현혜경)와 영상(권귀숙), 4·3 극(박찬식), 미술(박경훈), 문학(김동윤)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현혜경(2004)은 1987~93년, 1994~97년, 1998~99년,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4·3 위령 의례의 담론 지형의 변화를 총 네시기로 구분하고, 위령 의례와 관련해서 폭동이나 항쟁이나 하는 기억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의 4·3 위령 의례들은 양민학살의 기억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성과들은 4·3 담론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로는 아쉬움이 있다. 4·3 담론의 사회적 표현 양식에 대한 통시적 접근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상징체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3 담론에 대한 논의는 김성례(1999)와 양정심(2000), 권귀숙(2001)의 연구에서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 김성례는 국가 권력이 4·3 담론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폭력에 대한 망각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권력은 또 ‘용서’와 ‘화합’이라는 담론을 조성시키며 폭력의 행위자와 그 폭력의 피해자를 동일시함으로써 같은 피해 의식을 이끌어 낸다는 의미에서 ‘기만적’인 담론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심은 1980년대까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4·3이 달리 해석되고 있음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 4·3특별법을 태동시켰던 양민학살⁶⁾ 담론이 결국 국가에게

6) 김동춘(2000)은 ‘양민’을 ‘사상적인 순수성, 즉 세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한 다음 좌익을 악으로 보고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면 ‘양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학살은 정당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양민’에는 어떤 가치를 절대선으로 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불순한 존재로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학살의 정당성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극도의 반공주의가 통용되는 한반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국가주의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남북한 양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양민’ 개념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적인 규범에서 사용되는 ‘민간인(民間人·civilians)’ 개념을 제안한다. 이로써 인권의 관점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3과 관련한 대부분의 표기에도 ‘양민학살’이 사용되어져 왔다. 위의 논리를 견지할 때, 4·3 역시 ‘양민학살’의 개념을 유지할 경우, 극우 반공주의가 통용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다시 말해 ‘양민’ 개념으로는 4·3 당시 발생했던 학살, 그 모든 죽음의 신원을 밝혀내는 진상규명 작업을 아우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4·3이 진압된 이후, 폭동 담론이 지배적이었던 군부 정권 시기에 ‘양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고 4·3의 민중들을 객체화시킴으로써 결국 이들을 역사로부터 배제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양민학살론’이 학살을 저지른 주체가 국가라는 점을 간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주 민중들의 항쟁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난의 역사가 아닌 항쟁의 역사가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좌우의 편향된 시각에 입각한 역사 해석은 ‘4·3의 민중들을 객체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역사로부터 배제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민중들의 항쟁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4·3을 새롭게 볼 것’을 강조했다.

권귀숙은 4·3의 기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경찰, 군인, 서북청년단, ‘산사람(무장대)’, 좌익 단체, 우익 단체, 일반 주민 등 출신 성분에 따라 4·3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가해의 기억이나 치욕적인 기억은 억압되어 있는 반면 피해의 기억은 부각되고 강조되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담론과 증언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 담론들이 나오고 있다”(권귀숙, 앞의 글, p.208)며 담론과 기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전체적인 4·3담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개괄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논의되어지고 있는 4·3담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는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3특별법 제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연구 성과가 없다. 그리고 김성례를 제외한 다른 연구자들은 효율적인 담론 분석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담론의 정치’에 대한 접근을 소홀히 했다. 특히 양정심의 연구는 어떠한 담론적 상황에서도 수용되거나 혹은 배제되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게 된다는 ‘담론적 질서’를 간과했다. 항쟁 담론의 회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담론 구조 역시 선택적으로 수용되는 역사만이 유통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했던 당시 항쟁 세력들은 ‘빨갱이’로 매도됐고, 사건을 진압했던 것은 자유주의를 위한 수호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희생은 호국을 위한 장렬한 전사로 미화됐던 역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반공 담론이 한국 사회의 지배 담론으로 위치하는 상황에서 1990년대 중·후반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 ‘양민학살’ 표현의 사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4.3 이후의 담론적 상황을 전개함으로써, ‘주체-정치-효과’라는 담론의 메커니즘이 결국 어느 담론에서나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인 점을 밝히고, 특히 오늘의 현실에 접근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담론이 어떻게 권력과 맞물려 작동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적 담론 이론이 유효하다. 그 점에서 유물론적 역사관을 주창했던 「독일이데올로기 I」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어떠한 시대에도 지배적 사상은 곧 지배 계급의 사상이다. 즉 사회의 물질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은 동시에 사회의 정신적인 힘도 지배한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있는 계급이 결국 정신적 생산수단도 관리하며, 그리하여 정신적인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사상은 대체적으로 그 지배 사상에 종속된다...그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지배하고 한 역사 시대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는 한, 당연히 그들은 모든 영역에 걸쳐 그 지배를 행할 것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고하는 자로서, 사상의 생산자로서 지배하고, 그리하여 그 시대의 사상의 생산과 분배를 규제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의 사상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된다.(Karl Marx-Engels, Friedrich 저·박재희 역, 2001, pp.82~83)

유물론적 담론이론은 담론과 담론 외적인 것 사이의 긴장적 접합을 뜻하는 담론적 실천의 중요성에 주목한다.(윤평중, 1988) 이러한 담론의 물질성은 이데올로기가 ‘물질적’이라는 알튀세르(L. Althusser)의 언급과 유사한데, 그는 이데올로기가 종교-교육-가족-법률-정당-노조-문화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물질적 실체의 형태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문제틀로 기능하면서 우리의 인식과 행위를 결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은 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

한다. 담론이 이데올로기적 종속의 직접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Louis Althusser 저·이진수 역, 1991) 라클라우(E. Laclau)나 무페(C. Mouffe)같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알튀세르의 통찰을 전용해서, 담론을 ‘접합적 실천의 결과로 생긴 구조화된 총체성’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바꿔 말하면 담론은 담론 구성체, 즉 헤게모니 구성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윤평중, 앞의 책, pp.167~168)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은 푸코(M. Foucault)의 담론 이론에서 방대하게 형상화된다. 그는 담론 형성을 위해 네 가지 차원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상-주체-개념-전략이 그것이다.(M. Foucault 저·이정우 역, 2000) 그 가운데서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주체’와 담론 공간에서 특정한 형태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전략’의 형성과 작동에 관한 것이다.

푸코의 담론 분석은 권력의 작동과 지식의 형성, 주체의 출현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권력 투쟁의 효과이거나 결과라고 주장하며, 주체 형성 역시 권력의 효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은 담론의 대상이나 주체의 위치, 개념 등을 가지고 그 담론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특정한 실천의 효과를 유도하는 일련의 체계를 일컫는데, 이러한 ‘전략’은 담론 내의 대상이나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배제(거부)하는 규칙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실천을 유도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담론적 질서’가 조성되는 것도 ‘전략’이 중요하게 관여하게 된다.

담론적 실천의 내용을 규정하는 요인에 비담론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이 개입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담론적 실천이 행해졌을 경우 그것은 곧 권력의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효과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담론의 대상, 개념, 주체의 형성에 작용함으로써 ‘담론의 정치’를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담론은 정치 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규율로, 지식으로, 혹은 권력으로 표출된다. 이것은 특정 시기의 특정 담론이 정치 사회적 상황과 이데올로기 지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푸코에게 모든 지식은 사회적·제도적·담론적 압력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이론적 지식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지식 중 일부는 지배적 담론에 도전할 것이며 일부는 타협할 것이다.(Sars Mills 저·김부용 역, 앞의 책, p.57) 저항 담론이 지배 담론과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지배 체제를 위협하고, 그런 가운데 일부는 합의 과정을 통해 변증법적인 제3의 담론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 점에서 담론 분석은 특정한 역사적 국면, 즉 담론이 위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조망할 때 비로소 완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푸코의 담론 분석이 단순히 언어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비언어적 차원, 즉 외부적 조건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역사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과 통하는 부분이다. 맥도넬(D. Macdonell) 역시 담론들은 그것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그가 말을 하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고 언급한다. 때문에 담론은 갈등을 수반한다.

담론은 내부적인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제도, 사건, 경제적 실천 등 정치 사회적 문제와 다양하게 연관을 맺음으로써, 그것들에 따라 형성되고, 규정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담론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서 진리와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다른 사회적 실천과 다른 담론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Sars Mills 저·김부용 역, 2001)

결국, 담론은 사회적 산물로서 이해 가능하다.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담론 주체들의 의식과 사고를 반영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인 언어나 기호로 조직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담론은 단순한 말과 글의 조합 수준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내재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다.

‘담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담론 주체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 때문에 동일한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지배 담론의 전략에 따라 수용하여 조직화시켜 유포되는 ‘사실’이 있고, 거부 또는 배제하여 일체의 사회적 논의를 차단시키는 ‘사실’이 있게 된다. 홀(S. Hall)에 의하면, 담론이 설정되면 그로부터 제외되는 주체가 있고, 특정 기억은 선택되지 않게 된다.(Stuart Hall 저·임영호 역,

1996) 푸코의 담론 역시 담론을 통해 생산된 지식이 대상을 한정하게 된다.

담론의 형성과 유포, 확장, 그리고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작동되는 ‘담론의 정치’는 현실적인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담론 주체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사회적 처리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지기 때문이다. ‘담론의 정치’는 주체들의 현실적인 지위 유지와 담론의 조직적인 유포·확대 재생산을 위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택적인 수용/거부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게 되는데, 이때 담론 구조에서 유통될 수 있는 사실들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게 된다.

결국 담론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있어 담론의 정치적 행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성 여부는 필연적으로 ‘담론적 질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담론은 사회적 관계와 실천의 구체적인 체계로서, 담론의 구성은 상이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특정의 관계를 구조화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권력의 행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최종렬, 2004) 그 점에서 4.3 담론에 대한 분석은 ‘담론의 정치’로 인해 선택된 혹은 배제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여 밝혀내고, 계급화 혹은 서열화 구조를 해체시켜 객관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담론 연구는 여러 제도에서의 담론과 지식의 가면을 벗기는 능력에서 중요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이러한 제도의 담론과 지식은 사회를 갈라놓는 불평등, 즉 기본적인 계급간의 불평등, 민족성, 종교 등의 강요된 불평등은 모두 무시한 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주장하고 요컨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우리는 모두 같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지식을 공유하며, 항상 그래왔다.’(Diane Macdonell 저·임상훈 역, 앞의 책, p.20)

4. 연구의 대상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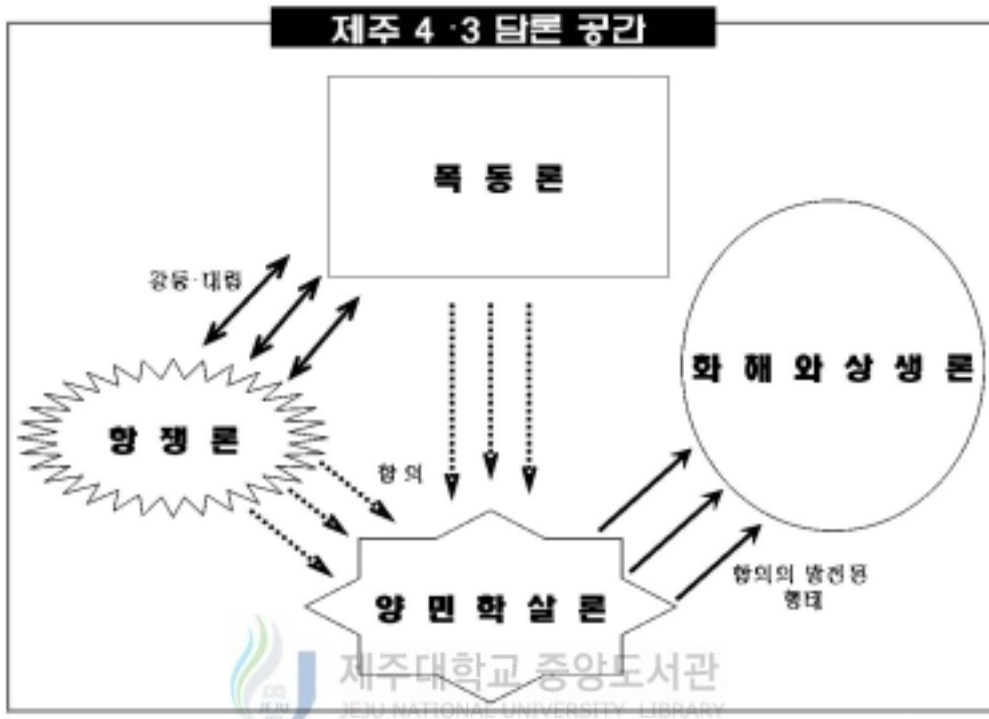
담론의 추이는 정치 사회적 지형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1960

년의 4·19혁명과 1987년 6월항쟁, 1993년에 민간정권으로 이양됐고 1998년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던 한국 사회의 정치 변화가 거시적인 척도가 된다. 4·3의 경우는 1988년에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반공유족회(이하 4·3반공유족회)가 결성됐으며, 이듬해인 1989년에 제1회 4·3추모제를 통해 재야 단체들이 조직화됐고 제주 4·3 연구소가 발족됐다. 1994년에 ‘합동위령제’가 봉행됐고, 1999년에 4·3특별법 제정, 그리고 2003년에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것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담론의 중요 전환점이 됐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담론이 전환되는 중요한 과도기적 지점으로 인식하고 4·3 담론을 ‘폭동론’과 ‘항쟁론’, ‘양민학살론’, ‘화해와 상생론’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사회는 다양한 담론적 표출의 장(場)으로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각각의 담론이 분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담론 공간 내에서 담론 간의 투쟁과 합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배적 혹은 주변적으로 위치하거나 변증법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제3의 담론이 양산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 점에서 각각의 담론은 분리되어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속성 속에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담론이 각 시기별로 전환되고 새롭게 위치하게 되더라도 과거의 담론들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담론 공간 내에서 그 역량이 지배화되느냐 주변화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양민학살론’은 양민학살에 대한 역사 인식을 일정 부분 공유하던 ‘폭동론’과 ‘항쟁론’의 일부가 합의 과정을 통해 재구성됨으로써 담론화 될 수 있었다. 다만 그것이 이전 시기에 ‘항쟁이냐, 폭동이냐’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충돌로 인해 짜임새 있게 조직화되지 못했을 뿐이었다. ‘화해’하고 ‘상생’하며 ‘평화’를 지향하고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자는 오늘날의 구호도 이미 4·3 담론이 충돌하고 타협하던 지난 시기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다. 다만 담론 공간에서 주변부로 위치 지어짐에 따라 현실적인 담론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 것뿐이다. 실제로 ‘화해와 상생’이 시대 구호로 주창되는 오늘날까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이념 대립과 같은 현상은 담론 공간 내에서 다양한 담론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는 해석에 대한 실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다음의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제주 4·3 담론 공간

각 시기별로 전개됐던 4·3 담론은 그것의 사회적 표현 양식이나 상징체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데, 각각의 담론을 구성하는 담론적 표현물을 통해 ‘담론의 주체’와 ‘담론의 정치’, ‘담론의 효과’를 포착하고 담론 분석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푸코는 담론적 실천을 지식 생산의 주체인 권력이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올바른 담론 분석을 위해서는 담론을 형성하고 유포하며 재생산시키는 작업에 누가 참여하는가 하는 담론 주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모든 담론적 행위가 주체의 판단과 전략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의 경우, ‘담론의 정치’는 선택된 ‘사실’ 혹은 배제(거부)된 ‘사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담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담론 주체의 전략적 차원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다.

Ⅱ. 지배 담론으로서 ‘폭동론’

경찰 악대가 동원되고 일개 분대의 군인이 동원되어 조총을 쏘아 올리고 진혼 나팔곡이 울려 퍼질 때 마치 당시의 영혼이 우리 몸에 엄습하여 오는 듯 한 숙연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주신 것은 합동위령제가 단순히 우리 유족만의 행사가 아니라 민, 관, 군이 혼연 일체가 된 전 도민의 행사로 승화된 영광된 행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김병언, 1993)

1. 지배 담론의 형성

4·3을 진압했던 세력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했다. 이것은 비단 4·3 뿐 아니라 동시대에 발생했던 국가 폭력의 사실을 최소화하고 은폐시키기 위해 지배 권력이 고안한 최적의 정치 수단이었다. 이를 통해 4·3 시기에 통용됐던 진압 세력의 폭력과 권위가 이후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탈바꿈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군부 정권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지배 체제는 국가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로 통용되는 모든 것들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사회 통합 역시 반공주의에 의해 가능했다.(문상석, 1999, p.110) 극우적 반공 규율을 일상에까지 적용시켰던 군부 정권은 4·3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선택적으로 허용했다. 규율에 대한 저항적 움직임은 허용될 수 없었고, 반공 장치를 통해 억압함으로써 지배 담론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폭동 담론은 이러한 체제 속에서 지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4·3이 진압된 이후 강도 높게 지속됐던 반공 규율은 4·3에 대한 역사 인식을 ‘남로당 공산분자들에 의한 폭동’에 한정시켰다. 그 이상의 역사적 해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환경이 조성됐기에 가능했다. 4·3에 대한 언설을 억압함으로써 ‘빨갱이 사냥’의

신성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김성례, 앞의 글, p.244) 지배 담론으로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폭동론’은 결국 폭력 주체가 스스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현실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시키는 담론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4·3이 진압되면서 형성된 국가 기구는 제주민들에게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강요함으로써, 숙명론적인 패배의식을 강요했다.⁷⁾ 4·3을 자유롭게, 조직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주민들은 지속적인 레드 콤플렉스의 자기 검열을 강요받게 됐고 폭력과 권위 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구축된 반공 정권은 이렇게 개별 역사 주체들로 하여금 담론적 환경을 통제하고 폭동 담론을 사회의 규칙으로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담론적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제주 사회에서 폭동 담론이 어떻게 구축됐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친일 협력자들의 반민족 행위에서부터⁸⁾ 미군정 혹은 이승만 정권의 권위적인 반공이데올로기⁹⁾, 또는 4·3 과정에서 만들어진 극우반공체제¹⁰⁾ 등 다양한 설명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설명은 4·3을 기점으로 형성된 제주 사회의 극우 반

-
- 7) 이러한 상황은 광주 5·18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5·18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간 5·18 담론의 가장 큰 부분은 침묵이었다. 침묵은 여러 방면에서 부과되었는데, 이는 언어의 부재라기보다는 사회 정치적으로 부과된 것이었다.”(최정운, 1997)
- 8) 4·3은 40년간 터부시되어 왔고, 그것은 권력 측이 철저하게 암흑 속에 매장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유지해 온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일찍이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였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서, 그들이 해방 후 오늘까지 권력을 잡고 있으며 오늘날의 정권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김석범, 1998)
- 9) 한국의 처리에 있어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정의 정책에 충실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역시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충실했다...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공히 4·3을 국내 치안 교란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반란, 즉 정부 전복으로 보아 이를 철저히 진압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재단을 우선시 하였다.(안정애, 2002, p.11)
- 10) 이영권(2000)은 제주도 유력자 집단을 A그룹(건국준비위원회 간부), B그룹(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C그룹(도지사,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그리고 D그룹(도경찰국장, 지역군사령관)으로 분류하고 유력자 층위의 방식과 부일 경력, 이념적 성향 등의 기준을 근거로 성분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B·C·D그룹은 극우세력의 주도가었던 1947년 3월 1일 이후부터 주로 활동했고, 국가 권력의 지원이라는 외적 규정성을 통해 충원됐으며, 부일(附日) 경력의 비중이 높고, 극우적 성향을 띤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적 기본 구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제주 사회에서는 4·3반공유족회와 군·경 우익 단체들이 폭동 담론의 주요 집단을 형성했다. 특히 4·3유족회는 4·3반공유족회라는 이름으로 1988년에 결성된 후 당시 제주 사회에서 폭동 담론을 형성하고 유포시키는데 비중 있는 역할을 했다. 초대 부회장직을 맡았던 김병언 씨는 유족회 조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¹⁾

우리는 4·3의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혈맹(血盟)이다. 당시 산사람(화합차원에서 온건한 호칭으로 바꿈)들에게 피살된 가족, 반대로 산에 올라가서 그들과 같이 행동하다가 진압대에 피살된 가족, 멋도 모르고 어슬렁대다가 피살된 가족 등 양각색의 4·3의 현장에서 피살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4·3 현장에서는 적대적 상극된 양속관계였다. 그러나 4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같은 제주도민이라는 동향애가, 역사의 한 순간에 시대를 잘못 만나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억울함이,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숙원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마침내 우리의 희생은 공산항쟁에 의한 희생이라는 공통 인식 하에, 말을 바꾸어 우리의 희생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명예로운 가치를 들고 우리는 뭉칠 수 있었다.(김병언, 1994, pp.110~111)

‘4·3 현장에서 피살된 가족들의 혈맹’임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4·3을 ‘공산항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희생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됐다는 논리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4·3유족회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

11) 그러나 당시 항쟁 담론 측은 4·3반공유족회를 다르게 표현했다. “4·3 사건 당시 ‘산사람’들의 납치 또는 습격으로 피살된 민간인 가족(원호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단체로 ‘88년 10월 29일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가 끝난 직후 반공회관 2층 사무실에서 결성됐다. 이날 회장으로 송원화(66세, 전 반공연맹도지부 사무국장), 부회장에 김병언(61세, 현 오현중학교 교감), 오인규(55세, 농장경영) 씨 등이 선출됐다. “4·3사건 당시 반공 일선에서 희생된 원혼을 위로하며 나아가 반공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취지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반공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4·3 40주년을 기점으로 4·3 진상 규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당시 토벌의 대열에 섰던 반공 세력을 결집한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최근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군보 도지사가 도민화합의 차원에서 위령탑 건립 등을 유족회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유족회’가 민간인 반공 유족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져 주목을 끈다.”(제주 4·3 연구소, 1989a, p.115)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4·3반공유족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송원화의 아버지는 무장대에 의해 희생됐고, 자신은 4·3 당시에 경찰 신분을 토벌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 현재까지 ‘후유장애자’로 살고 있다. 1990년 초·중반에 각각 ‘제주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이하 4·3민간인유족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김병언과 박서동의 가족들 역시 무장대에 의해 희생됐고, 2002년에 결성됐던 ‘대한민국건국희생자제주도유족회(이하 건국유족회)’의 주요 구성원인 오형인과 김성수 역시 무장대에 의한 피해 가족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반공 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1990년에 접어들어 4·3민간인유족회의 ‘공산항쟁’, ‘반공정신’과 같은 이념 지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이러한 담론 인식은 폭동 담론을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표출되어져 나타났는데, 4·3민간인유족회의 “정관”(4·3민간인유족회, 1993)도 그 중 하나이다.



제2조(목적) - 본회는 1945년 8·15 광복 이후 4·3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민간인의 원혼을 위로하며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좌경세력에 대처함은 물론 전후세대에 대한 국민정신 함양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4·3을 치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홍보

제35조(경과조치) - 본 회의 정관은 1988년 10월 30일 창립한 「제주도4·3사건민간인반공희생자유족회」의 회칙을 그 모체로 한다

제37조(개정) - 본 회의 정관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조직 명칭에서 ‘반공’이란 단어가 삭제되기는 했지만, ‘4·3반공유족회의 회칙을 모체로 한다’는 조항을 명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론에서 단어의 정치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Diane Macdonell 저·임상훈 역, 앞의 책, p.69),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좌경 세력에 대처’와 같은 반공 언어들은 폭동 담론의 은밀

한 표현에 다름 아니게 된다. 또한 텍스트가 정체성과 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Norman Fairclough 저·이원표 역, 2004, p.7) 폭동 담론의 주요 주체들이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반공 논리에 의해 파생된 것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¹²⁾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변용 현상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문건은 1989년 당시 제주 4·3 연구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홍만기, 1989)인데, 이를 통해 폭동 담론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역설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군, 경찰, 우익 청년 단체에 관계했던 인물들이 ‘월간 관광제주’란 도내 잡지를 통해 산사람(폭도 표현)의 만행을 계속 소개하고 있고, 4·3 희생 반공 유가족회를 결성하여 자체 추모비 건립 움직임을 보이는 등 관변 우익집단의 대응 논리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올해 들어 관심과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4·3 사건에 대한 일반도민의 거부감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 많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농촌의 기성세대들에겐 아직도 털어놓기에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있는 실정임.



위의 글은 ‘군, 경찰, 우익 청년 단체에 관계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변 우익집단’이 편파적인 4·3 인식으로 ‘산사람의 만행’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고, 유족회 결성이나 추모비 건립과 같이 그들 집단만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의 4·3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농촌 기성세대들’에게 4·3은 여전히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는’ 중압감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12) 해방 이후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는 ‘냉전 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 체제 대결의 전장과 같은 당시 상황에서 자유의 의미는 반공을 전제로 한 집단과 구성원에게만 향유될 수 있는 것이었다...이러한 미국자유민주주의의 선전의 전제는 미군정의 이해에 반하는 이데올로기와 의식에 대한 검열과 통제, 그리고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이었다...이렇게 반공주의적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자유민주주의’는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되고 형해화되었다. 즉 1960년대 박정희 독재 체제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등치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요소에 대한 탄압마저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이렇게 한국에 이식되고 전개된 자유민주주의는 탈급진화되고 반공의 틀레에 의해 억압된 기형적 불구의 자유민주주의였던 것이다.(송병헌 외, 2004, pp.60~62)

폭동 담론은 현재까지 4·3의 지배 담론으로 위치하고 있다.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그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담론을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구조를 지속시켜 왔던 것이다. 이는 당시의 지배 권력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정치 사회적 틀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담론 주체들이 작동시키는 ‘담론의 정치’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2. 폭동 담론의 정치적 작용 : 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4·3을 진압하고 건국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던 군경, 우익 세력들은 반공 국가의 지배 구조를 형성하며 자신들의 야만적인 폭력 행사를 은폐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항쟁으로서의 4·3,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서의 4·3은 금기시됐던 반면 공산 폭동의 역사 인식을 표방했던 개인 혹은 집단의 4·3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었다. 담론적 환경이 주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는 점을 인지할 때, 극우 반공 체제 하에서 제작된 일련의 상징체계들은 담론의 성향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4·3 직후 만들어진 비석¹³⁾이나 향토지, 각종 문헌 자료와 팸플릿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89년 6월에 열렸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제주도민 대회’에서 4·3반공유족회가 배포한 팸플릿 역시 주요한 담론 구성물이다.

13) 대정읍 충혼묘지의 ‘4·3충혼비’에는 “아 장하고 거룩하다. 나라 위한 일편단심, 배달의 햇불이요 민중의 등불이요 멸공의 투사이다. 4·3의 붉은 마수 이 땅을 휩쓸 때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나무 아래서 성담에서 용전분투하다 놈들의 흉탄에 쓰러진 그대들의 충혼 만세에 빛나라”라는 내용의 비문이 적혀 있다. 4·3 당시 순직한 경찰관을 위령하기 위해 1956년 서흥 청년회에서 세운 ‘순직 경찰관 합동 위령비’(제주도 서귀포시 홍중로 243번지 소재)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다. “내고장 내형제 내손으로 지키려다/한라의 백록담에 젊은 넋을 잠겨놓고/고원의 꽃이 되어 곱게 산화 되었으니/장하다 그대의 공훈 천추에 빛나라”. 김동만은 비석과 관련하여 “각 읍 면마다 4·3 당시 순직한 경찰과 군인들의 충혼비가 세워 있음은 물론 마을의 비석거리마다 각종의 공적비와 순직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어쩌면 그간의 4·3 위령 사업이나 추모 사업은 4·3의 토벌대 희생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일방적 충혼비 건립 사업은 4·3항쟁을 일방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편파적으로 기록해왔다.”고 언급했다.((「한라일보」 1999년 6월 24일자))

우 리 의 주 장

1. 정부는 사회 안정과 국가 보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2. 정부는 민주화를 구실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민주화 저해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라.
3. 50만 도민은 일부 좌경 세력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낙원 제주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당시 4·3과 관련한 정치 사회적 지형을 고려할 때, 4·3반공유족회가 지칭하는 ‘민주화의 저해 요인이자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일부 좌경 세력’이 제주 4·3 연구소를 비롯한 재야 단체, 즉 ‘항쟁론’을 구성하는 담론 집단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4·3의 서술 양상 역시 이러한 담론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 국사 교과서에 각 시대의 국가 권력과 지배 이데올로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정경희, 2002, p.39)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에 발행된 국정 교과서는 4·3을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에서의 폭동과, 여수·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79)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 폭동사건과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폭동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아래 제주도에서 공산무장폭도가 봉기하여,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남한 교란작전 중의 하나였다. 공산당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는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국사편찬위원회, 1982)

지배 집단의 입장이 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표현되는 방식은 특정 시대와 주제, 인물에 대한 강조와 배제, 그리고 특정 집단과 현상에 대한 전형화, 설명 없는 나열을 통한 단순화로 나타난다.(김영주, 1995, p.70) 1990년 노태우 정권 시기의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시기의 ‘폭동’ 표현을 대신하여 비교적 중립적 의미의 ‘사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4·3의 성격을 ‘무장 폭동’으로

단정 지으면서, 군·경의 ‘진압’을 ‘활약’으로, ‘공동체 파괴와 후유증, 침묵의 강요 등’을 ‘평온과 질서’로 선택하여 표현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그들은 제주도 4·3 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을 일으켰다.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그들은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군경의 진압 작전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국사편찬위원회, 1990)

위의 사례를 통해 군부 정권 당시 국사교과서에 기술된 4·3은 전적으로 진압 주체의 입장에서 기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부 정권 시기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4·3 담론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다시 담론의 표현 양식의 하나로 국사교과서에 반영됐다는 점을 인지할 때, 이 시기 4·3에 대한 서술 양상은 담론 주체의 정치적 작용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교육은 국가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그 지배적 권력 구조의 정당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사 교과서의 서술 양상은 지배 집단 중심의 권력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한기한, 2003, p.55) 따라서 해방 직후 세계냉전체제 구도와 같은 외적 환경이나 미군정의 실책, 친일 관료들의 재등용,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과 같은 4·3의 내·외적 조건들에 대한 언급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었다. 4·3을 ‘공산폭동’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역사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 온 것이다.(조성윤, 2001, p.47)

그러나 1990년 중반에 민간 정권으로 이양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14) 이 같은 현상은 역대 정권에 대한 국사 교과서의 서술 양상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 정부에 대해 5, 6차 교육 과정이 “유신체제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경직성과 각종 역기능이 심화”나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대통령에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와 같은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3, 4차 교육 과정에서는 “군사 혁명의 이념과 혁명 정부의 의욕적인 정치”나 “정신 혁명과 국민 의식을 고취”와 같은 표현을 통해 긍정적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4차 교육 과정에서 발행된 국사 교과서가 전두환 정권의 긍정적인 면만을 서술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상황도 바뀌게 된다.¹⁵⁾ 그러면서 4·3에 대한 국사교과서의 서술 양상도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은 김영삼 정권 시기 6차 교육과정에서 발행됐던 국사 교과서의 4·3 부분인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처음으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여전히 ‘공산주의자’의 ‘유혈 사태’로 인한 ‘무장폭동’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시기의 서술 양상과 다르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남한 각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96)

노태우 정권부터 4·3이 ‘사건’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사건의 주체를 여전히 ‘공산주의자’로 언급하고 성격을 ‘무장폭동’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국사 교과서의 4·3 인식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폭동 담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4·3특별법이 제정됐던 김대중 정권 시기의 7차 교육과정에 가서야 중립적인 기술이 가능해짐으로써 극복되어질 수 있었다.

단독정부수립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대투쟁이 일어난 곳은 제주도였다. 1948년 4월 3일 단독 정부수립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경찰 및 군인들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들 지역의 선거는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다. 미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 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되었다.(김한중 외, 2002)

15) 6월 항쟁과 민주화 이행은 민주화 이전의 각 층위에 구조적 지형 변화를 일으켰다. 민주화 이행 이후 국가는 과거처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반면 정치 사회와 시민 사회 영역은 그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정해구 외, 2004, p.22)

여기에서는 사건의 성격을 이전 시기의 ‘무장폭동’이 아닌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주체 역시 단순히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서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로 수정됐다. 또한, 진압 세력으로서 ‘미군정과 군인, 경찰, 우익청년단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희생자 규모 역시 ‘수만 명’으로 비교적 구체화됐다.

한국 사회의 지배 집단은 국사교과서의 발행권을 독점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쟁점들의 제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그리하여 국사 교과서와 같은 표현 양식을 통해 독점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여타의 역사 인식을 봉쇄함으로써 담론적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다.(김영주, 앞의 글, p.70) 그러나 담론적 질서가 내재해 있는 억압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질서를 거부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저항담론으로서의 ‘항쟁론’이 형성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Ⅲ. 저항 담론으로서 ‘항쟁론’

40여 년 전의 4.3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임을 간과하지 맙시다. 당시 <군정청>이라는 통치기구를 통해 4.3 학살을 배후 조종하였던 미국은 수입개방과 ‘하와이형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40여년의 한을 간직한 우리들에게 또다시 보이지 않는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42주기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1990)

1. 저항 담론의 형성

사회 민주화를 위한 시도가 6월항쟁을 정점으로 확산되면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지배 구도는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진보 진영이 조직화되면서 대항적 위치에서 기존의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 담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군부 정권에 의해 금기시된 언어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소통되기에 이르렀고, 차단당했던 화두들이 조금씩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

6월항쟁의 사회적 파장은 사회 민주화로의 이행과 함께 제주 사회 내의 진보 진영을 조직화했고, 자치적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게 됐다. 문화 일반에서는 4.3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생산됐으며, 민중항쟁 사관에 입각한 연구 성과물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¹⁶⁾ 이 같은 움직임은 4.3이 공개적인 논의 공간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배 담론으로서 ‘폭동론’의 견고한 지배 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보 세력의 대항 담론은 물리적으로 차단당해야 했던,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소통될 수밖에 없었던 4.3의 논의를 본격적인 저항 담론¹⁷⁾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

16) 4.3 관련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양정심(1998)과 박찬식(1999), 김종민(1999)을, 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나간재 외(2004)를 참고할 것.

17) 저항 담론이라고 할 때는, 저항적 행위 혹은 사회운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현실

었다. 1989년을 기점으로 4·3을 ‘항쟁’으로 인식하던 집단들이 서로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항쟁 담론은 또 지역 사회의 현실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일련의 저항 운동이 4·3 당시 항쟁 주도 세력의 정신을 계승하고, 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인식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4·3에 대한 저항적 인식이 자신들 운동의 중요한 자산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박찬식, 앞의 글), 서서히 현실 운동의 추동력이 됐던 것이다.¹⁸⁾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신을 기리는 작업이 당면한 현실 모순을 해소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 모순된 정치 현실 등 제주 사회의 현안들이 결코 4·3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저항 담론의 형성은 결국 민주화 의지의 표출이자 지역 사회의 현실 모순 해소라는 두 가지 의미로 집약되게 된다. 군부 정권 하의 구조적 억압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사회 내에 잔존하는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움직임으로서 4·3담론이 역할하게 됐던 것이다.

이는 4·3을 ‘항쟁’의 인식에서 담론화하려 했던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민중 사관에 입각한 소장학자들의 학술 연구는 저항담론으로서 ‘항쟁론’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지적 토대가 됐다. 이 시기 4·3 연구는 반공 담론 하에서는 소통될 수 없었던 항쟁의 역사를 밝히고, 그 주체를 ‘민중’으로 집중시키면서 은폐됐던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미군정과 경찰의 발포를 중요시하며 민중을 항쟁 주체로 설정하고 단선·단정 반대와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투쟁의 지향점으로 분석하는 등 기존의 역사 해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의도적으로 차단됐던 4·3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현실 운동의 추동력으

(지배 혹은 국가, 체제)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조직화된 말 혹은 체계화된 언술을 의미한다. (조희연 편, 2004)

18) 김영범(2004, p.33)은 “4·3 진상규명 운동이 민주화운동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전개되었고, 가장 큰 추동력도 그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설명한다.

로 기능하게 됐고, 항쟁 담론의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4·3이 진압된 이후 40여 년 동안 사실 자체가 은폐되거나 왜곡됐기 때문에 사실을 복원함으로써 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양정심, 앞의 글, pp.274~275)

연구 성과 외에도 현실 운동으로서의 접근이 두드러졌다. 이는 제주도내 재야 단체들이 4·3이 발발한지 41주년이 되는 1989년 ‘41주기 4·3 추모제 준비위원회’(이하 41주기 준비위)를 발족시키면서 가능할 수 있었다.¹⁹⁾ 제주여민회를 비롯해서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그림페브림코지, 제주YWCA대학부, 제주YWCA청년부, 제주교사협의회, 제주사회연구소 준비위원회, 제주 4·3 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 등이 주축 단체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와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가 후원 단체로 참여했다. 이들은 추모기간을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시켰는데, 이처럼 추모제 형식을 통한 조직적 움직임은 투쟁의 출발이자 한 양식이었다. (나간채, 앞의 글, p.19) 41주기 준비위는 또 ‘4·3 추모 및 진상규명추구대회’에서 ▲4·3 항쟁의 진상규명 ▲미국의 공개사과 ▲연좌제의 실질적 폐지 등을 주장하게 된다. 개발 문제 등 당시 지역 현안 문제들에 미국과 집권 여당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제주 사회의 현실 모순을 타파할 수 있는 동력을 4·3의 항쟁 인식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19) 홍만기 씨는 1989년 제1회 4·3 추모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연구소 위상이 분명해진 것은 제1회 4·3 추모제를 준비하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민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시민회관 장소 임대를 쟁취했고(당시 시장은 저희들에게 시민회관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계속 만나주지 않았는데 저와 오옥만 씨 등 단체 상근자 10명이 시장실에 찾아가 따지고 임대약속을 받아내었음) 박경훈 씨가 주도하는 브림코지에서 결개그림, 휘장 등 밤샘 작업을 하며 준비했고 약속했던 김윤수 심방이 핑크를 내자 당시 신에 정공철 심방이 추모곡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도 행사는 무리 없이 준비되어 지역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당시 정보과 형사들이 찾아와 청년문화회 시화전에 눈을 부라리며 ‘이덕구 선생님’이라는 시를 빨갱이 찬동언사로 주장하며 사뭇 협박해지는 분위기도 연출되었습니다.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푼돈을 내어놓으며 행사를 준비했던 여러 동지들의 숨은 헌신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행사에 제사협 정운형, 현기영, 김명식 선생님, 허상수 선배 등이 서울에서 내려와 참석했습니다.”(홍만기 서면 인터뷰, 2005년 10월 27일)

우 리 의 주 장

첫째, 정부 당국은 41년간 은폐되어 왔던 4·3의 진상을 밝혀라. 이를 위해 정부 보관 자료(4·3 당시 계엄 일지, 경찰의 출전 기록)을 공개하고 억울하게 학살당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연좌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라!!!

둘째, 미국은 미군정 하에서 시작된 4·3 대학살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죄 및 이에 대한 응분의 노력을 다하라!!!

셋째, 국회는 국정 조사권을 즉각 발동하여 4·3 진상을 조사하고 제주도민들의 요구인 4·3 청문회를 개최하라!!!

넷째, 50만 도민들을 그 동안의 피해 의식을 청산하고 진상규명은 우리들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4·3 진상규명에 동참합시다!!!

이듬해인 1990년부터는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사월제 공준위)가 구성됐다.²⁰⁾ 저항담론으로 형성된 ‘항쟁론’이 6월항쟁이라는 사회 민주화의 영향으

20) 연도별로 사월제 공준위 조직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990년에는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 4·3 연구소,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노래모임 숨비소리,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 우리땅밟기대행진동지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1991년에는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 4·3 연구소, 제주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 영상사진패 움직거리, 노래패 숨비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청년연합, 대정나라사랑청년회준비위원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1992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건),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노래빛사월,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 4·3 연구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1992년에는 노래빛 사월, 민주당제주시지구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제주노동상당소, 일하는 사람들,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건), 제주도개발특별법철폐및민주화실천범도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지역노동상당소, 제주청년연합,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1993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전교조제주지부,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제주민주청년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대정나라사랑청년회, 청년아카데미)),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 4·3 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청년연합, 도민정치실현제주범도민회, 민주당제주시지구당,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사랑간호사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1994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전교조제주지부,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제주민주청년회,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대정나라사랑청년회, 청년아카데미)), 제주 4·3 연구소, 민주당제주시지구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도민정치실현 제주범도민회, 제주지역노동상당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제주도지부, 제주여민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귀포 남제주군 지방자치발전연구

로 제주 사회 내부의 진보 진영을 고무시켰고, 결국 이들이 연대하여 조직화한 결과 사월제 공준위가 결성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항쟁 담론은 제주 지역 진보 진영의 연대를 조직화하는데 효율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정권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4·3 항쟁의 역사와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의 역사를 밝혀내고자 했다. 민중의 자율적인 항쟁 의지를 부각시켰으며, 4·3의 궁극적인 지향을 한반도 통일로 의미화 하는데 중요하게 역할 했다.²¹⁾

사월제 공준위를 주축으로 한 항쟁 담론의 전개는 4·3 문제를 대중화하고 정치적 이슈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4·3을 지역 사회 모순의 원류로 인식하고 진보진영이 연대하여 현실 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제주의 민주화’(김종민, 앞의 글, p.342)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됐다.

그러나 지배 담론은 여전히 ‘폭동론’이었다. 4·3 당시 학살을 집행했던 지배 구조가 온존하기 때문이다.(41주기 준비위, 앞의 글) 그런 상황에서 ‘항쟁론’의 담론적 영역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재생산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담론의 정치’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2. 「이제사 말함수다」가 선택한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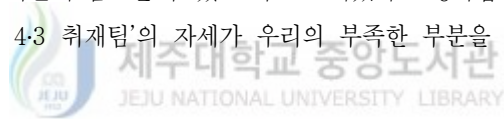
‘항쟁론’이 저항 담론으로서 담론적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쟁의 역사’가 선택적으로 부각되어야만 했다. 반면 그 이면의 역사적 사실들은 주변화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항쟁 담론을 구축하는데 지적 토대로 작용했던 「이제사 말함수다」는 그 영향력만큼 담론의 정치적 작용까지 살펴

모임(준),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화,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불교정도청년회, 노래빛 사월, 탐라민속문화패 테우리, 제주사랑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등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21) 사월제 공준위의 운동 방식은 이후 제주 지역의 개발 문제, 환경 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이 불거질 때마다 범도민적 연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모범 사례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4·3의 역사적 복권은 불분명한 옛 기록들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보다는 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에 더 기대게 될 것이다.”(「한겨레」 1989년 4월 7일자)

볼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이다. 당시 증언 채록과 편집 작업에 참여했던 편집자들은 「이제사 말함수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기영 선생이 소장하고 내가 사무국장 하던 시절, 그 시절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소위 「이제사 말함수다」 1, 2권이야.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알면은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지. 당시 채록할 때 상황도 알아야 하는데, 그때는 4·3 말을 못할 때야. 그것이 완전 케털라식으로 나온 거지. 그 어려운 여건에서, 그때 4·3의 이야기는 70년대 현기영의 「순이삼촌」 이후에는 진진이 없었잖아. 그때에 처음으로 그런 케털라 진법으로 책 두 권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4·3의 입김이 커지게 된 거지.²²⁾

우리가 4·3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증언활동을 통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소 창립 1년 전쯤부터 집중적인 증언채록조사를 하였는데, 그때 상황에서 경찰, 군부 쪽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두 증언집의 출판으로 4·3 현장의 목소리는 담아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서투르지만 어느 지역의 열기가 어느 만큼이었는지 기록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진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제민일보 4·3 취재팀’의 자세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²³⁾



여기에 소개된 대부분의 증언은 ‘신뢰감의 손상’(제주 4·3 연구소, 1989a, p.12)에도 불구하고 증언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편집했다. 그러나 유독 다음의 증언에서는 증언자의 신상 정보 뿐 아니라 증언에 대한 편집자의 평가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글은 4·3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증언 채록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다. 8·15를 전후하여, 이 곳 제주도에 민중들의 조국해방 열기가 드높았던 시절,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줬던 지역들 중에서 대정면 모슬포에서 초기(46년 11월~47년 3월 총파업)까지 남로당 대정면 지역 책임자를 지낸 이운방(李運芳, 1906년생, 현재 81세) 씨의 증언을 통하여 우

22) 문무병씨 인터뷰, 2005년 8월 9일.

23) 양성자씨 서면 인터뷰, 2005년 10월 27일. 양 씨는 1989년 당시 ‘이민혜’라는 가명으로 활동했었다.

리는 당시 남로당의 제주지역 조직기반 정도를 밝혀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4·3 항쟁 주체들의 힘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답은 무장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4·3 항쟁의 심장부에서 어떠한 연유로든지 간에 나오 내지, 소외되었던 한 사람의 목소리인 것이다. 산 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싸우면서 죽어간 수많은 님들, 죽은 자의 침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죽은 자의 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찾아내어 밝혀내어야 하는 것이 분단 상황을 살고 있는 역사 주체로서 후세들의 의무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 인터뷰를 읽음에 있어서 독자는 구술자가 지녔던 당시의 정세관이나 투쟁관, 조직관, 동지애, 대(對) 이북관,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관, 혁명관 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분의 목소리를 그대로 채록, 정리하면서 그러한 판단들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제주 4·3 연구소, 1989a, p.12)

위의 글은 「이제사 말함수다」 1권 중에서 스무 번째 이야기에 편집됐던 각주이다. 다른 증언과는 달리 증언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 당시 직업, 거주지 등을 상세히 명기했다. 편집자는 또 증언 내용을 ‘4·3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증언 채록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으로 표현하면서 ‘4·3 항쟁에서 나오 내지, 소외되었던 한 사람의 목소리’로 규정했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라고 제시했지만 결국 “정세관이나 투쟁관, 조직관, 사회주의 세계관 그리고 혁명관 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어떠한 증언이었기에 편집자로 하여금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 것일까.

가능, 불가능을 거론하기 전에 6·25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선전·선도를 통해서네 더욱 더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 혁명도 인민들이 하는 것인데, 인민들의 혁명적 분위기도 성숙하지 않았는데, 소수의 강경파들이 성급한 결정으로 오히려 미제의 실체를 알아 가는 인민들의 역량을 파괴시켜버린 것에 불과하지...당 노선도 잘못되었었고, 진압하는 군정의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잔인한 토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사태가 늘상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성적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제주 4·3 연구소, 앞의 책, pp.170~171)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건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남로당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

지고 말 운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 전쟁 후에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이 맹렬해지고...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았다 하더라도 봉기가 없었더라면 희생은 덜했겠거든. 결과로 봐서도 그게 안됐다는 거야. 얻은 것 없이 희생이 너무 컸어. 그 사람들 정세를 너무 달게만 파악한 거지...나는 교체된 사람에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지. 온건온유파가 후퇴하고 급진주전파가 등장했다고...그들의 인물됨을 봐...평소 정치적, 혁명적 언사를 밥 먹듯 남발하는 김달삼, 이종우 등을...(제주 4·3 연구소, 앞의 책, p.193)

증언의 주요 내용은 1948년 4월 3일의 무장 봉기가 결국 정세를 잘못 판단했던 급진주의자들이 당의 노선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국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²⁴⁾ 이는 항쟁적 시각의 4·3 인식을 조직화시키기 위한 담론 주체들의 의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제사 말함수다」 2권에서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4·3의 결과에 집착한 기계적 책임환원에 불과합니다. 이들 논리는 역사변혁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싸운 자의 눈으로 4·3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한계, 동기에서의 충동적 모험성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 역사에 대한 자기 속명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주장 속에 매몰되어 있는 분단 조국의 현실과 역사에 대한 자기 책임의 부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흔히 거론되는 엄청난 피해와 그 시기의 좌절 그 자체에 대한 평가도 싸운 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오류를 비판하고 질책할 때만 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제주 4·3 연구소, 1989d, pp.50~51)

편집자의 지적은 '당시 사건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오직 '싸운 자의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결국 증언자의 사실 경험은 편집자에 의해 '도덕성의 정도를 가늠해봐야' 할 수준으로 평가됐다. 결국 역사적 사

24) 이와 같은 주장은 양한권의 글(1988, p.12)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이렇다고 해서 유혈 사태에 대한 제주도 좌익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당시 한반도가 직면한 객관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소홀히 했고, 따라서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또한 올바를 수 없었다.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결여는 결국 그들을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나서게 했고, 이것은 제주도민의 파탄을 야기하였다.”

실이 담론을 구축하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작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 제주 4·3 연구소의 증언 채록 방식은 민중 항쟁적 주관이 많이 개입됐었다.(박찬식, 2004) 이와 같은 현상은 항쟁 세력의 무장 공격과 의도된 폭력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배제시켜버리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역시 항쟁 담론을 구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²⁵⁾ 이는 4·3 당시 무장대에 의한 피해 연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²⁶⁾

항쟁 담론이 선택한 ‘민중’ 역시 선택적 범주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²⁷⁾ 때문에 4·3이 ‘민족사적으로 민중적 이상과 지역 민중의 이상을 총체적으로 결합시킨 항쟁’(고창훈, 1990)이라는 주장도 항쟁 담론이 설정한 이중적 의미의 ‘민중’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주체에 의해 선택된 민중만이 역사 복원의 대상으로 한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다음의 글처럼 ‘시점, 정황 등’에 따라 ‘도덕성의 정도’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논리가 개발되어질 수도 있다.



그때 산 활동가들은 자신들을 ‘해방군’이라 불렀습니다. 그 해방군들의 규율의 문제는 우리가 조사하며 상당히 가슴 아팠던 부분인데요. 어째서 똑같은 형태, 방법의 죽임이 양

25) 4·3 민중 항쟁론이 4·3 당시의 민중의 행동을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대항폭력(reactionary violence)으로 해석한다면, 마찬가지로 공산 폭동론은 국가폭력의 행위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동에 대한 대응적 폭력(counter-insurgency violence)으로 보고 있다. 두 입장 모두 폭력의 행위자의 입장에서 폭력의 불가피성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김성례, 앞의 글, p.253)

26) 가해자별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회 신고서에는 토벌대 84.0%, 무장대 11.1%의 비중을 보였고, 4·3위원회 신고서에는 토벌대 78.1%, 무장대 12.6%로 나타났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p.373)

27) 진실을 규명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민중형식 속에서 민중의 삶 속에서, 41년 죽음의 역사를 뛰어넘고 공포 때문에 실어증이 되어버린 싸움의 진실을 되살려내는 작업이어야 한다...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민중의 입장이어야 한다.(제주 4·3 연구소, 1989b)

28) 물론 무장 세력의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봉기와 그 이후의 의도된 폭력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영범(2004) 역시 “그렇다고 남로당 제주도당 주도의 무장봉기와 그 후속 행동에 내재해있던 의도적 공격성이 부인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단함으로써 항쟁 역사를 접근하는데 있어 폭력의 역사가 “부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항쟁 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의도적으로 은폐됐던 것은 사실이다.

쪽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산사람의 경우도 ‘정당방위’로만 이해될 수 없는 학살사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시점, 정황 등을 잘 살펴 도덕성의 정도를 가늠해 봐야 합니다.(제주 4·3 연구소, 앞의 책, p.47)

결국 ‘폭동론’이건 ‘항쟁론’이건 담론 주체가 작동시키는 ‘담론의 정치’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속성을 띠게 된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부분이 많았다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말을 담기에 바빠 1차 자료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못 가졌습니다. 즉, 확인 작업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대로 증언의 진실만 믿고 써 나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내용을 몰고 간 측면도 있습니다...그것은 전적으로 취재했던 사람의 개인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4·3을 끝까지 지킨 이덕구 이하 무장대에게 점수를 주었고, 4·3의 와중에 전쟁 상황을 버두고 북으로 올라가거나 일본으로 몸을 피한 사람들은 비겁자라고 보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민중적 관점에서 지도부를 평가하였고,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록이 진행되면서 남로당의 지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지도부들도 다시 지리산, 팔공산 등의 전투에 투입되어 전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운방 할아버지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활동가의 면모에 걸맞게 젊은이들의 속단과 재단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²⁹⁾

왜곡된 민중의 역사를 바로 잡고, 산 자의 의무로서 억울한 원혼을 달래며 금기의 영역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수용했던 항쟁 담론은 동시에 자신들의 ‘폭력 역사’를 선택적으로 배제시켰던 것이다.

29) 양성자 서면 인터뷰, 2005년 10월 27일.

IV. 합의 담론으로서 ‘양민학살론’

사람들은 시각에 따라 이를 ‘4.3 폭동’, ‘4.3 민중항쟁’, ‘4.3 사태’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그러나 제주지사 후보들은 그냥 ‘4.3’ 으로만 부른다. 선불리 어느 한쪽에 기울면 다른 쪽의 유권자들은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95년 6월 13일자)

1. 합의 담론의 형성

‘반공’으로 대표되는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배담론으로 구축됐던 ‘폭동론’과 대항적 위치에서 저항담론으로 성장했던 ‘항쟁론’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4.3에 대해 양측이 표방하는 역사 인식, 기념 방식·대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제1회 4.3 추모제 장소 주변에 설치됐던 현수막들은 양측의 대립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근조 41주기 4.3 추모제’(41주기 준비위), ‘분열을 조각하는 4.3 논리 반대 한다’(4.3 반공유족회), ‘민족 반역자 문익환을 타도하자’(제주시 재향군인회)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제주 시내 곳곳에도 한국자유총연맹과 4.3반공유족회, 재향군인회가 ‘4.3을 바로 알고 외설에 속지 말자’, ‘내 주장 소중하면 남의 의견도 소중하다’, ‘국민생활 위협하는 폭력 시위 몰아내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의 문구로 상징되는 이러한 담론적 충돌 양상은 4.3민간인유족회의 ‘위령제’와 사월제 공준위의 ‘추모제’를 통해 양극화 된다.³⁰⁾ 1994년 양측이 공동으

30) 두 단체는 4.3을 보는 시각도 항쟁(사월제 공준위), 폭동(4.3민간인유족회)으로 극단적인 차이가 있고, 4.3의 해결에 대한 방법론도 진상규명(사월제 공준위), 치유(4.3민간인유족회)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구성원의 성격, 활동 목표, 사업 방향에 이르기까지 ‘물과 기름’으로서 양립하는 차별성을 띠며 각자의 행사만을 치러올 수밖에 없었다.(김경훈, 1993, p.32)

로 주최하는 ‘합동위령제’가 치러지기까지 4·3반공유족회와 4·3민간인유족회는 1991년 첫 위령제를 시작으로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사월제 공준위는 제주시 시민회관과 제주교육대학교, 탐동 광장 등에서 각각 위령제와 추모제를 따로 치러왔다. 특히 4·3민간인유족회 측이 ‘위령제’를 봉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양측의 대립 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역대 도지사들은 4·3유족회를 이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 실례로 1989년 국정감사 당시 지사였던 이근보 씨는 4·3유족회와 논의, 4·3 치유 운운하여 국회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으며, 공영기 전 지사는 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 대학생들과의 대화 등 4·3이 거론될 때마다 본 유족회를 이용 했습니다...작년에만 하더라도 공영기 지사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제1회 합동위령제를 성대하게 봉행할 수 있었습니다. 타지인인 전 지사도 4·3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제주인이 제주 사람의 아픔과 울분을 모른다고 도의회로 미룬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본 회가 적법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된 이상 수혜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³¹⁾

도의회는 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인 유족회 4·3 봉행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준위에는 지급되지 않고 유족회만 지급되는 것은 편파적인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는 작년 2천만원에 이어 올해도 3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 여겨집니다.(45주기 공준위, 1993)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항쟁론’이나 ‘폭동론’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더 이상의 담론적 효과를 담보해 내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1993년에 접어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 ‘45주기 사월제 공준위’의 사업 방향이 “도민 화합, 도민 명예 회복”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³²⁾

31) 4·3민간인유족회 측은 1992년에 위령제를 봉행하기 위한 자금 전액과 ‘위령탑’ 건립 성금 모금 준비 자금, 운영비 등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방 정부에 제출했다.(4·3민간인유족회, 1992)

제주도민의 간절한 소망이며 바램인 ‘합동위령제’를 대화합의 차원에서 성사시켜 각계 각층이 하나 되어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넋을 범도민적으로 위로하는 것을 이번 행사의 주된 사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의를 꾸준히 이어나가 도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는 ‘4·3 진상규명’이라는 제주도민의 오랜 바램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45주기 사월제 공준위, 1993)

이러한 변화는 4·3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는 두 주체가 기념행사를 별도로 치르면서 대립하는 양상이 도민 여론으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민간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시대 분위기로 전파됐고,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등 정치적 지형 변화도 작용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립하는 양측 담론의 전략이 수정되는 현상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데, 항쟁 담론의 핵심 주체인 사월제 공준위가 ‘반미’ 혹은 ‘반민자당’ 노선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주창했던 이전과는 달리, 1992년을 기점으로 국가 차원의 해결 기구를 구성하고 기념적 조치로서 보상과 위령탑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항쟁 담론의 핵심 주체인 사월제 공준위가 한시적 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나, 추모 방식이 운동 의례로서 굿이나 집회 형식에 집중되다 보니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비판도 제기됐다.

각 단체의 사업 계획상에 4월 계획은 전면적으로 설정이 되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들이 목적과 원칙을 수립·관철시키는데 한계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숨비소리, 1990)

사월제 공준위의 권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이는 사월제 공준위의 위상이 43주기 사월

32) ‘45주기 사월제 공준위’는 이외에도 ▲4·3 희생자 신원 ▲4·3 진상규명 분위기 조성 ▲4·3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조직 기반 구축 ▲4·3 항쟁 의의를 전국적, 세계적 과급을 45주기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제주4·3항쟁 45주기 사월제」 참고)

제 사업을 제 단체와의 공동 협의 하에 담보해내고 이를 위한 한시적 조직이라는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사월제 사업 전반(사업 선정, 형식과 내용, 배치 등)에 대한 사월제 공준위 내부의 사전논의의 부재에 기인한다.(제주 4·3 연구소, 1991)

이는 결국 지배 담론 내부의 결속과 통합 외에, 대중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담론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추모제 기간 중에도 4·3이 지난 41년간의 아픔을 위로 받고 새롭게 조명된 것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제주시민회관과 세종미술관, 그리고 대학 교정 뿐이었다.(「한겨레」 1989년 4월 7일자)

유족들이 주체가 되고 공동준비위원회가 후원이 되는 시기까지는 공동준비위원회의 단결된 힘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4·3에 대한 항상적인 홍보가 병행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새삼스러운 과제를 남겼다.(42주기 공준위, 1990, p.119)



‘반민자당 전선결집의 계기를 삼는다’는 방향성의 설정은 현재의 시국문제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한 부분...‘신원과 진상규명’과 ‘반민자당 전선결집의 계기’ 문제는 분리시켜서 사업 속에 진행시켜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대중 속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차원의 행사를 어떻게 잘 해내느냐가 중요하다.(제주 4·3 연구소, 앞의 글)

민간 차원의 유족회 건설도 같은 맥락에서다.³³⁾ 그러한 상황은 폭동 담론을 견지하고 있었던 4·3유족회에서도 나타났는데, 조직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위령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던 것이 대표적인 전략 수정의 형태이다.³⁴⁾

33) 항쟁 담론의 주체들이 소장 학자나 민주화 인사들이 주축이고 대부분이 4·3 비경험 세대들이었던 점은 같은 시기 폭동 담론을 구축하고 있던 4·3유족회 측의 주요한 비판 대상이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 ‘제주도 4·3 사건을 생각하는 모임’이 주최하는 4·3 추모제나 서울에서 제사협을 주축으로 치러졌던 추모제 역시 4·3 경험자나 유족들이 포함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34) 1988년 10월 발족된 4·3반공유족회는 1990년 6월 ‘제주도4·3사건민간인회생자유족회’로

결국 기존 담론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전략이 ‘4·3 희생자 신원’이나 ‘도민 대화합’으로 선회할 수 있었다.³⁵⁾ 그럼으로써 ‘항쟁이나 폭동이냐’로 대표되는 담론의 갈등적 전개 양상은 4·3 당시 국가 권력의 진압 작전에 의해 촉발된 양민학살에 대한 논의로 옮겨지게 됐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직적으로 구성되게 된다.³⁶⁾ 결국, ‘폭동’과 ‘항쟁’으로 대립 구도를 형성했던 두 담론이 마지노선을 양민학살로 설정함으로써 ‘억울한 희생’, ‘비운의 죽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게 된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4·3 진압 과정에서 폭력적 만행에 노출됐던 제주도민의 피해를 거론하고, 담론으로서 양민학살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 같은 담론 지형의 변화는 ‘모두가 4·3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제주도민의 단결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설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양측이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전 시기 사월제 공준위의 ‘추모제’와 4·3민간인유족회의 ‘위령제’는 서로 다른 주체들로 하여금 4·3 인식에서부터 담론적 전략과 구호와 참여자, 위령 대상까지 대립하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합동 위령제’를 계기로 담론 주체들이 표방했던 전략을 수정하는 작업이 비로소 진전될 수 있었는데, 수차례 지속된 양측의 논쟁과 협상 끝에 결국 ‘합의 사항’에 서명함으로써 물리적인

개칭되는데, ‘반공’이 삭제된 것은 이후 4·3유족회의 행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35) 김병언 4·3유족회장은 제46주기 4·3 희생자 위령제에서 ‘4월 3일은 화합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제사의 주체는 유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입니다...비록 위령제 봉행위원회 이름으로 오늘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봉행위원회가 모든 4·3 단체가 하나가 되어 구성됨으로써 범도민적으로 더 큰 행사를 치른다면 우리 유족들로써는 더 큰 것을 얻은 결과이므로 편협함을 버리고 이를 마다하지 마십시오...그러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는 뜻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의 시초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지의 주제사를 낭독했다. (제46주기 4·3 위령제 팸플릿 참조)

36) “민중항쟁에 초점을 둔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의 4·3 진상규명운동은 인권과 휴머니즘 차원으로서 ‘양민학살’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이는 80년대에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에서는 줄곧 견지되고 있던 입장이기도 했다...제주지역과 제주출신 인사들로 이루어진 90년대 진상규명운동 세력은 4·3을 제도권내에서 공론화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4·3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4·3은 양민학살이다”라는 인권과 휴머니즘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냈다. 즉 양민학살론은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도 있고 나아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4·3을 해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법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이루어냈다.”(양정심, 앞의 글)

조율이 가능하게 됐다.³⁷⁾

‘합동 위령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사월제 공준위와 4·3민간인유족회가 작성한 ‘합의 사항’은 담론적 ‘합의’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³⁸⁾ 또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이기도 했다. 사월제 공준위는 ‘합동 위령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표방해오던 ‘추모제’를 포기하고, 조직 명칭에도 ‘항쟁’ 단어를 삭제하게 된다. 이는 ‘47주기 사월제 공준위’부터 현실로 나타났는데, 사월제 공준위는 4·3민간인유족회 측에 보낸 문서에서 “두 단체가 공동으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7주기 4·3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 명칭에서 ‘항쟁’이란 용어를 삭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본 회의원한다면 ‘추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47

37) ‘합동위령제’는 1993년 사월제 공준위가 제기했었지만, 4·3유족회가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4·3유족회 측이 이미 지방 정부로부터 ‘위령제 봉행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지급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경훈(1993)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까지 규정될 수 있었던 이 행사가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지적될 사항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족회에서 공동개최의 불가능으로 지적했던 시간의 부족 ▲제주도의회 4·3특위의 준비 미흡 ▲사월제 공준위와 유족회의 엄청난 시각 차이 ▲제주도당국의 형평성의 문제 ▲합동위령제 개최에 도민 공감대 형성 미흡 등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서도 4·3유족회 측에 지원된 예산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결과론이지만 합동위령제 공동개최의 가장 큰 난점은 제주도가 유족회에 봉행기금으로 지원한 3천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이 공동개최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어버린 점이다. 도지사 및 시장은 유족회 행사에는 참석하고 사월제 공준위의 추모제는 화환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38) 봉행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 측의 ‘합의 사항’은 1994년부터 97년까지 치러진 ‘합동 위령제’의 팸플릿에 게재되어 있다. 1994년의 ‘합의 사항’은 “1)금년도 4월 3일 행사의 명칭은 ‘제46주기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라고 한다. 2)주최는 ‘제46주기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3)봉행위원회 기획단은 6인으로 하여 유족회 3인과 사월제 공준위 3인으로 하며 공동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단, 위원장은 유족회 회장으로 한다. 4)기타 나머지 사항은 봉행위원회 기획단에서 결정한다”라는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97년까지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양측의 대표가 서명한 이 문건은 “4·3유족들과 51만 도민의 화합을 위해 극단적인 용어(폭동과 항쟁)를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시작된다. 양측의 합의 내용에는 “제주 4·3 희생자 합동위령제”의 대표는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 유족회장”으로 하고, “봉행위원회”는 “양측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위령제시 봉행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주제사」 기획위원 1인이 ‘추도사’를 낭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건에는 또 “본 행사를 계기로 두 단체는 온 도민과 더불어 사실규명과 도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4·3으로 인해 사망했으나 도민의 정서를 고려 도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사료되는 인사는 본 위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제47, 48, 49주기 4·3위령제 팸플릿 참고)

주기 사월제 공준위, 1995)라고 입장을 밝혔다. 4·3민간인유족회는 스스로 ‘위령제의 제주(祭主)’임을 강조하면서 위패 작업과 제단 설치, 제물 장만과 진설, 그리고 위령제 제순 등을 주관했다. 재원 역시 각 참가 단체의 회비와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사월제 공준위의 방식이 ‘제46주기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봉행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게 됐는데, 애초 ‘사회단체’로 등록된 유족회가 일괄 집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공동 집행과 결산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다.³⁹⁾

그러나 기존 담론 집단의 전부가 이러한 ‘합의’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담론 집단의 분화와 직결되는데, 4·3 인식에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집단 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됐던 것이다. 실제 1996년 4월 4일에 제주 청년단체협의회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제총협) 주최로 열린 ‘4·3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결의 대회’에서는 사월제 공준위와 4·3민간인유족회의 ‘합의 사항’을 어기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사월제 공준위와 4·3민간인유족회가 합동위령제를 공동으로 봉행한다는 조건으로 “4·3유족들과 51만 도민의 화합을 위해 극단적인 용어(폭동과 항쟁)를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는데, 4월 4일 집회에서 뿌려진 “4·3특별법 제정하고 4·3 진상 규명하여 도민 명예회복하자”라는 제목의 팸플릿에는 ‘탄압이면 항쟁이다...’와 같은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김봉현·김민주, 1963)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문제가 됐다. 제총협은 결국 “제총협은 제총협 방식에 맞게 4·3 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사월제 공준위와는 차별화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제총협은 또 4·3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그 시기 양민학살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4·3 운동을 유족회와의 관계 속에서만(적어도 중심으로) 사고하고 매몰되는 것은 4·3 운동의

39) 사월제 공준위는 공동사업에 관한 한 공동부담과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참여단체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

영역을 넓히는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실제 사월제 공준위 회의 속에서 논의되는 것은 대부분이 유족회와의 관계였다. 물론 유족회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유족회가 전 도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다른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4·3을 알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피해 당사자인 유족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4·3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고리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넓혀야 하는 영역은 내용에서 4·3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그 속에서 나오는 현재적 의의이고 대상에서는 유족회 뿐 만 아니라 전 도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4·3 피해자가 유족 뿐 만 아니라 온 제주도민이 4·3 피해자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제8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1996)

4·3의 다면적인 역사 가운데 양민학살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담론적으로 주요하게 구성됐던 시기에 제총협의 노선은 담론 집단의 의도와는 분명 동떨어진 것이었다. ‘담론의 정치’로서 양민학살에 대한 4·3을 집중적으로 조직화시키자는 담론 전략에 이탈해서 ‘항쟁’적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이처럼 양민학살 담론이 물리적 ‘합의’를 통해 형성됐던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합의’ 규정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우려는 첫 ‘합동 위령제’에서부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항쟁 세력의 구축이었던 이덕구와 조몽구등의 이름이 희생자 명단팸플릿에 기재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로써 ‘화합의 시초’로 형성된 담론은 결국 갈등하는 담론들의 본질적 속성이 드러나면서 투쟁 양상을 재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⁴⁰⁾

지난 4월 3일 4·3 위령제 봉행시 안내 팸플릿에 우리 부모·형제들의 희생에 빌미를 제공한 후 혼자 살아남기 위해 탈출하려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이덕구와 그의 줄개들, 그리고 4·3을 도발시킨 후 제주도에 인민공화국 수립이 불가능함을 인식, 내륙지방으로 탈출, 행상 도중 체포되어 형을 받고 출옥, 20년 전에 병사한 조몽구 등이 등재된 사실에 대해 2천5백여 회원의 집결체인 4·3유족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여 회장직을 사임한다.⁴¹⁾

40) 명단 문제 외에도, 사월제 공준위 측 대표의 사진이 팸플릿에서 누락된 점, 제주도의회의장과 천주교 제주교구청 신부의 추도사가 등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의 첫 합동위령제는 행사 이후에까지 그 여파가 계속되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해냈다.

41) 김병언 4·3유족회장의 “사퇴 성명서” 일부.(「제주신문」 1994년 4월 14일자)

4.3 위령제 봉행위가 시간의 촉박 등으로 희생자 명단 등재에 대한 원칙 논의가 없었고, 교정 불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그 이유는 봉행위원회 기획단이 1차적으로 예산문제의 처리에 대한 원칙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았으며, 도지사의 원고가 늦게 도착한 부분, 그리고 시간 제약으로 인한 업무확인의 미흡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봉행위 차원에서 명단 문제에 대한 미비점은 봉행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시한 절충안을 수용하여 이를 봉행위원회 기획단의 연명으로 '감사와 사과의 말씀'의 광고문을 3개 신문사와 사월제 공준위 양 단체가 이 문제를 양해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제주도가 절충안을 내게된 이유, 봉행위원회 대표끼리의 이견 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향후에 도민적인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확인된다...특히 명단의 수합과 확인은 도민 스스로가 내년의 도민적인 위령제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의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봉행위원회3인대표를제외한제주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전원, 1994.)

이덕구는 친일파이고 공산주의자이며, '억울한 희생자'가 아닌 '가해자'이다.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희생'이지 안내 팜플렛 취지문에서 말하는 '억울한 희생'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해서 사월제 공준위 측에서 이덕구, 조몽구 등을 4.3의 '억울한 희생자'로 간주, 그들이 들어 있는 원고를 인쇄소로 넘겼는가에 의문을 가진다...4.3 도발의 원흉인 이덕구와 조몽구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삽입된 것이 다분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은가. 이를 고의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덕구, 조몽구가 들어있는 명단이 재야의 4.3 연구단체인 '제주 4.3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이다...사월제 공준위 측 공동대표 중에는 유족이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유족이 아니면서 유족인 체 해서 4.3민간인유족회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이렇게 함으로써 사월제 공준위 측은 진실에의 접근을 외면해 4.3의 주체인 4.3민간인유족회를 모멸하고, 나아가서는 4.3민간인유족회를 와해시켜 4.3의 주도권을 잡고, 4.3을 이용, 자신들이 목적하는 일들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월제 공준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다...사월제 공준위는 재야단체이다. 그러니깐 헌법의 범주 안에 수용될 수 없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제도권내에 있는 기관, 단체들이 행하는 사업에 비판을 가할 수 있어도 동업자의 형태로서 참여할 수는 없다.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 1994)

결국 이덕구와 조몽구 등의 명단 문제에 대해 양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된다.⁴²⁾ 사월제 공준위는 무장 세력의 명단이 위령 대상에 포함된 것을 과정상의 착오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4·3민간인유족회 측에서는 사월제 공준위 측의 의도된 계획으로 단정하고 “앞으로 재야 단체와 제도권 내에 있는 단체가 동업자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된다. ‘화합’이 시대적 요구로서 작동되고, ‘합동위령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 새로운 담론 지형이 형성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 구조화된 ‘폭동론’이나 ‘항쟁론’의 담론 주체들이 인식하는 4·3은 결국 표면적인 ‘합의’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월제 공준위의 ‘추모제’와 4·3유족회의 ‘위령제’가 ‘누구를 추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정치·이데올로기적 다툼의 과생물이라는 점에서(김영범, 2004, p.54), ‘합동위령제’는 ‘합의 사항’을 전제로 한 ‘다툼의 연장선상’이었던 것이다.

명단 문제에 대한 사월제 공준위와 4·3민간인유족회 사이의 공방은 위령제 이후에도 쉽게 끝나지 않았다.⁴³⁾ 그러나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도 ‘합의’를 통한



42) 명단 문제는 결국 누구에 의해 어떠한 경로로 기재됐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그 여파로 인해 발생한 ‘항쟁론’과 ‘폭동론’ 간의 갈등 양상이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화합’을 주창하고, ‘희생’이라는 지점에서 4·3의 인식을 공유하며, 단일한 조직을 구성하고 한 장소에서 의례를 치렀던 현상 이면에는 담론이 충돌하고 각축하는 양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것이다. 특히 “4·3으로 인해 사망했으나 도민의 정서를 고려, 도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사료되는 인사는 본 위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의 담론적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척도였다. 봉행위원회라는 ‘합의’된 주체가 ‘양민학살’이라는 4·3의 인식을 공유하기는 했지만, 결국 ‘도민의 정서’와 ‘혐오감’을 해석하고 인식하는데 있어 서로의 담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적 차이에서 기인한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 시기 담론 구조가 대립하는 담론 집단 간 ‘물리적 화합’의 결과라는 점을 인지할 때, 담론적 갈등은 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사월제 공준위로 대표되는 항쟁 담론 측에서는 가해자로서 국가 권력을 상징했고, 4·3유족회로 대표되는 폭동 담론 측에서는 공산 무장대의 폭동이라는 국가 권력의 4·3 인식과 일치하다는 점에서, 공통의 양민학살 담론 하에서도 자신들의 고유 담론이 효율적으로 유포되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43) 4·3민간인유족회는 “사월제 공준위 측은 ‘위령제 봉행위원회 위원장은 유족회장임’한 합의사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위령제장내 만장게시 금지’, ‘특정단체 거론금지’란 약속사항까지 위반 위령제장을 마치 재야의 시위장화하게 했다...이런 뜻에서 사월제 공준위측에서 ‘주관’은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라는 선에서 양해해 주었으면 한다. 위령제는 제사이다. 제사에는 제주(祭主)가 있기 마련이며 제주는 4·3유족회임을 이해했으면 한다”(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 1995)라고 전년도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

‘합동위령제’ 방식은 1994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양측의 ‘합의’ 관계 역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직 내 구성원이 바뀌고, 4·3특별법 제정과 같은 공통의 목적으로 인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양측은 점차 밀접한 관계로 재구성된다. 변화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 4·3반공유족회와 4·3민간인유족회, 그리고 사월제 공준위의 주요 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의 주도권을 이양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론 집단은 양민학살 담론과 화해와 상생 담론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2. 수난사적 맥락 속에 가려진 ‘폭력의 역사’

양민학살 담론은 지배적 위치의 ‘폭동론’과 저항 담론으로서의 ‘항쟁론’은 이 데올로기적 접근을 지양하고 양민학살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접점으로 한 일종의 ‘담론적 합의’이자 ‘타협의 산물’이었다. ‘합의’된 담론은 이전 시기의 대립과 갈등 양상을 극복하는 진전된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4·3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가능하게 했고,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해결’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는 담론적 기반이 됐다.⁴⁴⁾ 결과적으로 4·3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된 것이다.(박찬식, 1999)

이는 본격적으로 4·3의 해결을 국가 단위로 촉구하며 압박하는 형태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4·3 공

며, 1995년 47주기 4·3위령제는 사월제 공준위 측과 공동 봉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 끝에 결국 합동위령제를 봉행할 수 있었다.

44) 특히, 1995년과 96년은 첫 민선 도지사와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던 해로 지역 사회의 4·3 담론을 주요하게 관찰할 수 있다. “대통령 공약 4·3 명예회복 언제 이뤄지나...”(「제민일보」 1995년 4월 1일자), “지사 후보 4·3 치유 토론, ‘98년까지 위령탑 건립 추진””(「제민일보」 1995년 6월 20일자), “4·3위령공원 올부터 착수, 중점추진 27건 등 공약 62건”(「제민일보」 1995년 8월 1일자), “4·3 진상규명·위령사업, 정부지원 이뤄져야”(「제민일보」 1996년 3월 25일).

원과 위령탑 건립 사업 지원'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4·3 위령공원 부지 매입비 30억 지원'이다.⁴⁵⁾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4·3 위령탑'과 '위령공원'을 조성하는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전 시기에 국가의 해명을 요구했던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지 못했다. 국가가 가했던 폭력과 그로 인한 민간인들의 희생, 이후 연좌제와 같은 반공 장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던 권력 행위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의 단계를 제시했던 것이다.

'국가 주도의 은밀한 망각의 각본'(김성례, 앞의 글, p.256)으로 대표될 수 있는 담론 현상은 그 점에서 4·3을 인식하는 국가의 이중적 시선이다. 담론의 정치적 작용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배제된 역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보다는 가시적 성과의 '위령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위령 사업들은 이 시기 지배 담론의 전략이 반영된 담론 구성물이다. 결국 '합동 위령제'를 비롯하여 '위령탑'과 '위령 공원' 등에 국가 차원의 물적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해결=위령'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졌다. 4·3특별법과 같은 성과를 도출했지만,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지점을 확보하는 데에는 장애 요

45)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4·3사건의 치유를 위해 제주도민의 명예회복과 화합 차원의 위령탑을 건설 하겠다"고 밝힌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은 1995년 제주도가 작성한 '4·3 치유를 위한 위령탑 건립(안)'으로 구체화된다.(제주 4·3 연구소, 1995) 이 문건에는 제주 4·3을 "해방 직후인 48년 4월 3일 ~ 57년 4월 2일까지 만 9년동안 도 일원에서 무장봉기 세력과 정부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위령탑 건립이 "4·3 위령사업을 전개, '용서와 화합'으로 당시 희생된 영령을 진혼하고 유족들을 위로하여 도민 갈등의 근원적 치유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문건은 또 "사업시행기간"을 "1995년부터 1998년까지"로, "공원 조성 면적"을 "10,000평"으로, "추진 주체"를 "제주도(4·3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위령탑 건립 13억, 전시관 건립 2억5천, 공원조성 12억 등 총 사업비 32억"이 산정되어 있다. 4·3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대통령 역시 1999년 제주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4·3위령공원 부지매입비' 명목의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인으로 작용하게 됐던 것이다.⁴⁶⁾

이는 ‘4·3 잃어버린 마을 표석’ 설치 사업과 같이 지방 정부가 추진 중인 기념사업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4·3에 대한 국가의 기념 행위가 역사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담론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4·3 잃어버린 마을 표석’에 마을을 전소시키고 주민들을 학살한 주체를 명기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담론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 집단에 의한 역사 해석이 상징 조작을 통해 현실화됨으로써 그들의 정당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이영권, 2005, p.226)

현재 제주도민들은 4·3이 어떻게 해석되기를 원하는가? 물어두었던 4·3을 어떤 식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살려낼 것인가? 그 답을 모른 채 4·3 공원이, 위령탑이 세워진다면, 추진주체의 일방적인 때로는 교조적인 이야기만이 담겨질 우려가 있다.(유철인, 1995)

4·3의 위령 사업을 4·3의 성격규정 없이 애매모호하게 명칭을 정하고 이를 위령비 또는 탑에 각인한다면 4·3을 공산폭동이며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도민 또는 희생자의 유족들과 4·3을 민중항쟁이라고 역지를 쓰는 자와 그 단체들 간에는 4·3의 위령 대상을 보는 시각이 상반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 공비들에 희생된 원혼과 과잉진압으로 죄 없이 군경에게 살해된 원혼이 위령 대상이 될 것이고 후자는 4·3 민중항쟁을 일으킨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달삼, 이덕구를 비롯한 양민을 학살한 공비가 위령 대상이 될 것이다.(오균택, 1997)

결국 ‘양민학살론’의 이러한 담론적 시도는 4·3의 인식은 대립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 작업이 선행될 때에만 올바른 위령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통의 비판을 초래했다.

46) 1990년대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4·3의 항쟁이나 저항적 측면보다 학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4·3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련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 및 문화적 재현의 텍스트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 주도의 범도민 위령계를 형성시켰고 제주 도민 모두를 동일한 수준의 4·3피해자로 만들어 다양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국가 전략으로 볼 수 있다.(현혜경, 2004, p.177)

V. 합의 담론의 발전된 형태로서 ‘화해와 상생론’

우리 도민들이 4.3의 통한을 풀어내고 상생의 도민 대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침으로써 4.3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우리 100만 내외 도민 모두가 화해와 용서로써 도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21세기는 분명 희망과 번영을 안겨 주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4.3 54주년을 계기로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서 21세기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편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김재호, 2002)

1. 화해와 상생 담론의 형성

1990년대 초반부터 4.3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이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상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궁극적으로는 4.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화해와 상생 담론의 중요한 구성물 가운데 하나인 4.3특별법은 4.3이 국가 단위의 제도적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제도적 범주 하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⁴⁷⁾

이러한 정치 사회적 변화는 담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됐는데, 소모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여, ‘화해’하고 ‘상생’하자는 담론이 조직적으로 생산되게 된다. 물론 그러한 주장은 4.3담론이 ‘폭

47) 4.3특별법의 제도적 실천은 지방 정부인 제주도에 설치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이하 4.3사업소)를 통해 실천된다. 이는 세부적으로 △4.3 실무위 운영 △4.3 희생자 결정 사항 및 진상조사보고서 후속 조치 추진 △4.3 관련 위령제 봉행·지원 및 4.3 관련 단체 지원 △4.3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4.3 유적지 조사 보존·발굴 및 관리 △4.3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4.3 관련 위령 시설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동론'이나 '항쟁론', '양민학살론' 시기에도 존재했었다. 다만, 담론의 영역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어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작용되는데 한계에 부딪혀 왔을 뿐이다. 담론 구도가 재편성된 것일 뿐, 기존 담론들의 긴장 관계는 지속됐다. 그러다가 4·3 제50주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연대 조직이 구성됐고, 본격적으로는 4·3특별법 제정 운동을 진행시켜 나가게 되면서 4·3 문제의 새로운 접근 방향으로 재구성됐다. 지속적인 진상 규명 노력과 함께 '4·3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과 전술'(강창일, 2000, p.15)까지, '화해와 상생' 담론은 이 같은 정치 사회적 과정을 통해 담론화 될 수 있었다.

반세기 전에 겪은 4·3은 이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평화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다. 4·3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반세기 동안의 노력은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21세기 '평화의 섬' 제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4·3으로 제주도민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것은, 21세기 '평화의 섬' 제주의 주체인 도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평화와 인권을 정착시켜 간다는 자아 성취감을 갖게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평화의 섬' 정착의 내재적이며 주체적 조건이 구비될 수 있는 것이다...20세기 냉전시대에 4·3과 같은 대참사를 겪은 제주사람들이기에 평화에 대한 추구는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충석 외, 2000, p.12)

도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 의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랑스런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의 이 위령제가 어두웠던 과거를 모두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근민, 2002)

'화해와 상생론'의 현실적인 추동력을 가능하게 했던 담론 주체는 4·3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민·관 합동 형식의 위원회 조직이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료들이 '당연직'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의 국면에서 '화해와 상생' 담론의 핵심적인 주체로 역할하게 된다.

지배 담론을 선점하기 위한 각 주체들의 투쟁 양상은 제도가 규정하는 조직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됐다. 핵심적으로는 이전 시기에 4:3을 ‘폭동’으로 혹은 ‘항쟁’으로 주창하고, 그에 따른 담론을 전개하며 치열하게 각축했던 이들이 비로소 국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위원회 조직 내에서 구성원으로 만나게 된다. 그 속에서 우월한 담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반복됐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 시기에 4:3 담론을 형성하고 지배적으로 사유해왔던 각 주체들의 현실적 관심은 담론의 중심축이 국가로 옮겨져 가고 있는 현상보다는 국가가 규정한 범주의 담론 구조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집중되어져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4:3 문제의 해결 주체로, 4:3 담론의 주요 주체로 서서히 위치하게 된다.

담론 주체를 선점하기 위한 각축 양상은 4:3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4:3범추위)가 그것이다.⁴⁸⁾ 4:3위령제의 주체가 봉행위원회에서 4:3범추위로 전환됐던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합동위령제’ 봉행에 지방 정부가 재정 및 인원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는 점이 대표적인데, 이는 4:3위령제에 참여하는 유족들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합동위령제’의 사회적 위상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결과였다. 이를 통해 위령제의 주체가 민간 영역에서 민·관 영역으로 확대되고, 제도적 영역의 행·재정적 지원의 규모가 증가되면서 4:3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보상 심리를 충족시켜주게 됐다. 그러나,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구성원의 대부분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선정함으로써 이를 제도권 영역으로 흡수하려 했다는 점은 제도화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국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담론 구조로의 재구성을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4:3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제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담론 구조가 국가 중심

48) 4:3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위령사업과 명예회복, 위령제 및 위령탑 건립,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정부와의 절충을 담당하는 한시적 성격의 기구로, 제주도 추천인사 40명, 제주도의회 추천인사 40명, 그리고 4:3유족회 추천인사 20명 등 총 100인 이내로 구성되며, 제주도로부터 위령 사업과 관련한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소속 공무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주도정」 1999년 8월 20일자)

으로 재편되는 상황은 계속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그리고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가 구성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들이 구체화 됐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점으로 한 제도권 영역으로의 재편 움직임과 함께 조직 내에서 각자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담론 주체들 간의 각축 양상은 더욱 치열하게 혼재하여 나타나게 된다. 주체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담론 공간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생산된 담론을 효율적으로 유포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4·3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게 된다. ‘시행령 원안’과 ‘입법 예고 마감 시점의 시행령 안’의 내용이 심각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시행령 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의 정부 부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었다.⁴⁹⁾ 4·3특별법 상의 최고 의결 기구인 4·3중앙위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시행령 제정은 초반부터 갈등 양상을 떨 수밖에 없었다.

[기존 시행령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관련 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입법 예고 마감 시 시행령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군사(軍史) 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49) 「제주일보」 2000년 4월 7일자 참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주도내의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왜곡된 보고서 작성자 문책 ▲4·3위원회 위원 20명 중 국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군사(軍史)전문가는 조문에서 삭제 ▲진상 조사 작업을 수행할 민간 상임전문위원 약간 명을 두는 규정 신설 등 4개 조항을 요구하기에 이른다.⁵⁰⁾ 이들 단체들은 또 ‘4·3특별법 시행령 개악에 따른 항의 농성’과 ‘4·3특별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범도민 쉼기대회’ 등을 통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결국, 당초 시행령 공포일이었던 4월 13일에서 한 달 가량 지연된 5월 10일에야 원안 그대로 가결될 수 있었다.⁵¹⁾

‘평화’와 ‘인권’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4·3담론은 ‘화해’와 ‘상생’이 시대의 구호였다. 그러나 담론 주체를 구성하는 양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동시에 담론 구조의 최상층부에 국가가 위치해 있고 이를 중심축으로 작동되어진다는 사실이 화해와 상생 담론의 지배적인 구조적 환경이라는 점을 간

50) 4·3특별법 제정 이후의 국면에서는 이전 시기 폭동 담론과 항쟁 담론, 그리고 양민 학살 담론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집단들이 하나의 연대 조직을 통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게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4·3특별법 시행령안 개악에 따른 기자회견’(2000년 4월 7일) 자료집을 참고할 것.

51) 4·3특별법 시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압박 수위는 지속됐다. 4·3 실무위를 구성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실무위는 4·3위원회가 위임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구인데, 4·3특별법 시행 조례가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4·3 관련 단체들을 이번 제주도의회 제 16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4·3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이제 마지막 남은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혀 두는 바이다. 첫째, ‘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므로, 그 직능과 역할을 반드시 조례안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의 독단적인 인사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회나 4·3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실무위원회는 제주도내의 4·3 관련 전문인사나 특별법 제정 취지에 걸맞은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연히 4·3특별법을 반대했던 인사들이 선정되는 오류를 결코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만약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다시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제주4·3도민연대 외 2개 단체, 2000)

과했다. 4·3 문제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 예산 집행 등의 모든 메커니즘이 국가를 통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화해와 상생 담론의 형성은 결국 4·3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제도권 조직들이 가동되면서 국가가 규정해 놓은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각각의 담론 주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담론의 정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재구성된 역사적 사실은 ‘담론의 효과’를 위한 담론 주체의 정치 활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2. 선택된 ‘4·3 희생자’, 선택된 ‘4·3의 역사’

4·3특별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한계로 인해 일련의 후속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다.⁵²⁾ 이러한 상황은 4·3 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으로 본연의 목적인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한계로 나타나게 된다. 「4·3진상조사보고서」 역시 보고서 초안이 채택·확정되기 전에 앞서 군부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의 반발로 인해 중요 대목들의 일부 어구를 간접적으로 지칭 또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고 어떤 것은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김영범, 앞의 글, p.47)

이는 4·3특별법 제2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4·3 희생자’의 범위와 선정 방식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같은 시기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이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질 정도였다.⁵³⁾

52) 4·3특별법의 조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별보상’과 ‘재심규정’, 그리고 ‘평화재단’과 관련한 조항이 최종 단계에서 삭제됐다. 김영범(앞의 글, p.47)은 “4·3특별법에서 채택된 과거청산 모델은 학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차원의 복원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실현에 국한된 것이었다. 국가배상 및 책임자 처벌과 같은 배상적·응징적 정의(restitutive & retributive justice)까지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4·3특별법과 관련한 문제는 김순태(1998), 이재승(2003)의 논의를 참고할 것.

53) 4·3 희생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는 이 시기 각 정당이 마련한 4·3 정책 및 공약 사항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새천년 민주당은 ‘희생자 사실조사 심사와 진상규명 완료’를, 한나라당은 ‘4·3 희생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4·3 희생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는 기존의 폭동 담론을 형성했던 집단에서 4·3특별법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거기에는 4·3 당시 서북청년단 위원장이었던 문봉제를 비롯하여 채명신(4·3 당시 폭동진압), 김종면(4·3 당시 폭동진압), 임부택(4·3 진압군 사령부 참모), 백선진(4·3 진압사령부 참모), 김호산(4·3 당시 전국학련 제주도위원장) 등 진압 세력 뿐 아니라 박익주(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박진경의 유족)와 정남휴(4·3 당시 무장대에 의한 피해자) 등 유족들까지 포함됐다. 특히 이철승(4·3 당시 전국학생연맹 위원장), 강영훈(전 국무총리), 최영희(전 국방장관), 백석주(예비역 대장), 양창식(전 국회의원), 손진(대한민국 건국회 회장), 이경식(헌정수호 국민연합) 등 4·3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극우 성향의 인사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각 2000년 4월과 5월에 4·3특별법 위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⁵⁴⁾

결국 2001년 9월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다수 의견으로 각하시킴으로써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4·3희생자에 대해 ‘사건기간 중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사망자 등 가운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부수되는 시장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도를 반대한 자 가운데 그 정도를 살펴 희생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도민 명예회복 : 4·3 희생자 예외 없는 인정’을 각각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54) 소송은 총 두 차례 제기됐는데, 2000년 4월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4·3특별법 위헌 청구 소송(2000헌마238)과 같은 해 5월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가 제기한 헌법소원(2000헌마302)이 그것이다. 이철승을 비롯한 15인의 청구인들은 “제주 4·3사건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 건설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조선노동당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반란이고,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산무장유격대를 경찰, 군인, 양민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위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승화 외 332명도 4·3특별법으로 인해 “헌법 제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 및 행복추구권, 제 11조 평등권, 제 39조 제2항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재 2001.09.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383, pp.387~388) 이와 관련하여, 4·3도민연대를 비롯한 4·3단체들은 ‘4·3특별법 헌법소원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폭동의 주모자나 연루자까지도 희생자로 결정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된다.

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이념과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 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 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에서의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⁵⁵⁾으로 언급했다.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은 결국 4·3중앙위가 4·3 희생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4·3중앙위의 집행 행위에 다음과 같이 결정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위원회가 장차 '희생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에 관하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원회가 위와 같은 자들에 대한 희생자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인들의 명예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없다. 설혹 위원회가 위와 같은 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경우일지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한 위원회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요컨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55) 헌재 2001.09.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 383, pp.402~404.

아니다.⁵⁶⁾

총 일곱 차례의 4·3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위원회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외부에서도 다양한 압력이 행사됐다.⁵⁷⁾ 결국, 2002년 2월 4·3중앙위 제4차 회의에서 4·3 희생자의 선정 기준인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이 의결된다. 4·3중앙위는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4·3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희생자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을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정하게 된다. 특히 4·3심사소위에서는 “심의 대상 중 남로당 간부와 무장대 수괴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희생자에서 제외”하고, “4·3으로 인한 수형자 중 사망·행방불명된 자가 ‘희생자 심의기준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희생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4·3 당시 우익 계열의 단체원들,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과 경찰들, 그리고 무장대에 의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결국 4·3중앙위로 하여금 4·3 희생자를 선별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시키게 된 것이다. 4·3 희생자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4·3 희생자의 범주는 이제 4·3의 제도적 범

56) 헌재 2001.09.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383, pp.404~405.

57) 김인선 대한민국건국회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한 우익 계열의 단체 대표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원수(민주인사들, 경찰관, 군인)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하면서 1,500여명의 민주인사들, 선거관리위원들, 경찰관들, 군인들을 죽인 폭도들 즉 4·3내란의 주모자들은 4·3위령제의 위령대상이 될 수 없다. 1948년 제헌의원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1948년 4월 3일을 기해 살인, 방화, 약탈을 강행하여 “내란”을 일으켰던 “제주인민해방군”에게 피살된 사람들이 4·3의 희생자들이 될 것이고, 제주인민해방군이라는 폭도들의 조직에 가담하여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지 않았음에도 폭도로 오인되어 토벌된 양민들은 희생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한라일보」 2000년 4월 1일자 신문광고) 이에, 4·3연구소를 비롯한 18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을 구성하고, “신청자가 정말 4·3과 관련하여 사망했거나(즉 사망자가 제주 4·3사건의 발생지가 아닌 다른 지역-예를 들어 일본, 만주 등-이 아닌지, 제주 4·3사건 발생지점 이전 또는 이후가 아닌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희생자가 한 일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임), 행방불명 및 상해를 입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람들 중 신고기재 내용과 유족의 피해신고와 보증인의 보증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연대회의, 2001)

주로 확장되게 된다. 이는 곧 화해와 상생 담론의 중심 주체인 국가가 인식하는 4·3의 범주이기도 하다.

4·3 희생자의 인위적인 범위 설정은 위령대상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는 ‘누구를 위령할 것이냐’하는 투쟁 양상을 재현시키게 될 뿐 아니라, 4·3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중앙과 지방, 국가와 주민 사이의 상반된 해석으로 인해 4·3위령제의 이중성을 초래하게 된다.(김성례, 앞의 글) 국가의 대단위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건설 중인 4·3평화공원에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희생자의 위패가 없다는 사실은 그 점에서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⁵⁸⁾

이와 같은 담론의 정치적 속성은 결국 ‘담론의 효과’를 위해 동원되게 되는데, 오늘날 4·3담론의 주요 주체인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가 자치 단체의 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인 ‘세계 평화의 섬’ 계획에 4·3을 차용함으로써 담론적 효과를 획득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⁵⁹⁾ 4·3이라는 비극적 참화를 겪었지만, 지속적인 진상 규명 노력을 통해 4·3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는 일련의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섬’ 추진 전략에 따른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시도에 대해 4·3의 공적 영역에서의 해결을 바랬던 민간 진영 측에서도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담보해 내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⁶⁰⁾ 4·3의 다면적인 역사 가운데, 현재의 담론 주체와 일치하는 4·3의

58) 2005년 현재까지 항쟁 주도 세력이었던 김양근, 김대진, 이종우 등은 ‘제주4·3 희생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4·3 당시 무장 봉기를 주도했던 이덕구 등은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59) 삼무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 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세계 평화의 섬 선언문”에서 발췌)

60) ‘화해와 상생’의 논리적 허구성에 대해 문무병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기영 소설로서나 이야기하던 4·3이 하나의 운동으로, 그것이 학생 운동이든, 민중 운동이든, 민주화 운동이든, 그 궤도를 타면서 하나의 역사 세우기가 된 거지. 그 역사 세우기를 말하면서 주장했던 게 바로 ‘해원 상생’이야. ‘해원 상생’의 원칙을 세운 것이 말하자면 4·3 50주년 때였거든.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해원이거든. 그런데 역대 정권은 그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했거든. 잘못된 역사를 강화하고, 과장하고, 자기네를 정당화시켰단 말이야.”(문무병씨 인터뷰, 2005년 8월 9일) 또한 김명인(2005)은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담론 주체의 정치적 영향이 강하게 반영돼 있고, 이는 4·3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권위로 작동되기 때문이다.⁶¹⁾

“4·3이 한국 현대사 나아가 전후 세계사의 행정에서 가지는 복잡하고도 중차대한 의미들이 ‘국가폭력과 인권’이라는 문제로 환원되어 소멸되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화해와 상생 담론 시대에 편파적으로 부각되어지는 4·3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61) 이러한 현상은 4·3이 자치단체장의 개인 치적으로 환원되어 버리는 현상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2005년 7월 제주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제주도지사 직을 박탈당했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를 8·15 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다. 탄원서에는 “서슬 퍼런 군사 정권 하에서 4·3 희생자 위령제에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던 ‘4·3’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함으로써 4·3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반박 논평에는 “서슬퍼런 군사 정권 하에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던 4·3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4·3 해결의 실마리를 푼 것은 우근민 전 지사 때문이 아니라 정권의 탄압과 감옥 가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은 4·3 운동가들, 선진적 언론, 도민들의 숨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제주의 소리<http://www.jejuori.net> 2005년 7월 14일자) 실제 우 지사는 1992년 당시 다량취급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4·3특별법 제정 이후 국면에는 일련의 성과들을 본인의 치적으로 환원시키려고 시도했다. 다음의 글을 통해 1992년 당시 4·3에 대한 그의 행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경찰과 행정 기관은 다량취급 사건이 발표되자 무척이나 당황한 듯 당일 현장에 급파한 후 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량취급 희생자들은 토벌대에 발각되자 집단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행정 기관에서는 이장과 마을 유지들을 동원하여 유족들을 설득했다. 물론 당시 관선지사가 종달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체면을 고려하여 마을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을지도 모른다. 도민 화합을 부르짖으며 4·3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위정자들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행정 기관에서는 표면적으로 매장을 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화장을 바랐고, 서둘러 종결하길 원했다. 구좌읍과 북제주군, 제주도가 ‘유골 처리는 유족의 소관’이라는 편리한 구실을 내세워 발을 빼저리는 것 역시 무책임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장례식은 행정 당국과 관련 기관이 일부 유족들을 회유하여 대다수 도민들이 희망하였다. 양지바른 언덕에 공동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시켜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김기삼·김동만, 2002)

VI. 결론 : 제주 4·3 담론의 사회학적 분석

이상의 논의는 다음의 <표>로 재구성 할 수 있다.

<표> 4·3 담론의 구성

4·3 담론 담론적 구성	폭동론	항쟁론	양민 학살론	화해와 상생론
주요 담론 전환 시기	-	1989년 4월, 4·3추모제	1994년 4월, 합동위령제	1999년 12월, 4·3특별법 제정
담론 형성 방식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지배 체제 구축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 형성/갈등·대립을 통한 확대 재생산	현실적 '합의'	'합의'의 발전된 형태/제도화
주요 언술 및 상징어	공산폭동/사태 /폭도	(민중)항쟁/민중 /통일	합의/화합/인권	화해/상생/평화
담론 주체	군경-우익조직 등 4·3 진압세력(A)	4·3연구소와 사월제 공준위를 중심으로 한 재야 단체(B)	A와 B의 변증법적 합의 담론 (A'+B')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A, B, A', B') / 상호 협력
담 론 적 효 과	긍정적 효과	-기득권에 대한 도전 -민중사관에 입각한 4·3 해석 -항쟁 주도 세력 정신 계승 -현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토대로 작용	-대중성 확보 -국가의 제도적 지원 현실화 -4·3특별법 제정으로 귀결	-국가 지원 제도화 -제도적영역에서 공론화 -대통령 공식 사과 -공개된 역사
	부정적 효과	폭력적 역사 은폐, 희생자 선정 합의 등 담론 주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역사적 '사실'로서의 4·3이 재구성되어 유포됨. 반면, 담론 확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는 '사실'들은 배제(거부)됨.		
'담론의 정치'가 반영된 주요 구성물	국사교과서 /비석/팸플릿 등	「이제사 말씀수다」 / 각종문건 등	합동위령제 /위령공원 등	4·3 희생자 /세계 평화의 섬 등

4·3담론은 시기별로 크게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우선, '폭동론'은 극우 반공 체제 하에서 4·3을 진압했던 세력들이 지배적으로 위치하면서 유포시

킬 수 있었던 4·3담론이다. 여기에 사회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저항 담론으로 형성됐던 것이 ‘항쟁론’이다. 그리고 갈등하는 두 담론 내부에서 양민학살 인식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합동위령제’라는 현실적 선택을 통해 ‘합의’함으로서 전개시킬 수 있었던 ‘양민학살론’과 4·3특별법 제정 이후 일련의 ‘용서’, ‘화해’, ‘상생’, 그리고 ‘평화’가 시대 구호로 주창되면서 전개될 수 있었던 ‘화해와 상생론’이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담론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결됐는데, 지배 담론은 ‘담론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의 정치’를 작동시키게 된다. 그 점에서 4·3이 진압된 이후 오늘날까지 각 시기별로 전개됐던 4·3담론은 그것의 담론적 지위나 역량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선택된 ‘사실’을 유포시키거나 혹은 배제시켜왔다.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객관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담론 주체가 작동시키는 ‘담론의 정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사하여 부각시키거나, 거부하여 배제시켜 버리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4·3을 존재하게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담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동원됐던 ‘담론의 정치’는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사유함으로써, 결국 그 시대의 사상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Karl Marx·Engels, Friedrich 저·박재희 역, 앞의 책, p.83) 폭동 담론이 지배적으로 구조화됐던 시기에 간헐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었던 저항의 움직임들이 공포정치, 반공정치를 통해 차단됨으로써 지배 담론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항쟁론’과 ‘양민학살론’, ‘화해와 상생론’ 역시 이러한 담론의 구조적 지배 현상을 재현하고 있다. ‘평화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선택된 4·3의 역사가 조직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점에서 ‘담론적 질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폭동 담론은 극우적 반공 규율이 구조화된 한국 사회에서 4·3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던 정치적 환경이 작용한 결과였다. 4·3을 진압했던 군·경·우익 집단들이 이 시기 주요하게 폭동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시키게 되는데, 이때 자신들의 ‘세습적 지배’와 ‘폭력적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된 ‘사실’이 주요하게 유포되고

재생산된다.

항쟁 담론이 작동시킨 ‘담론의 정치’는 소통되지 못했던 4·3의 항쟁 역사를 공론화하고 대중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담론적 효과를 얻어냈다. 반면 이들의 ‘민족’ 혹은 ‘민중’은 그 의미와 범주가 담론 집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결국 개별 역사 주체들의 경험과 기억을 담론 주체의 의도에 한정하여 획일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4·3 당시 무장대에 의한 폭력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 역시 항쟁 담론의 정치적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결국, 항쟁 세력의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사실’은 ‘양민학살론’이 지배적으로 유포되던 시기에도, 화해하고 상생하자는 오늘날에도 조직적으로 거론되지 못하게 된다.

‘폭동론’과 ‘항쟁론’의 주요 담론 집단 가운데 ‘합의 사항’에 서명하고 ‘합동위령제’를 공동으로 봉행함으로써 전개시킬 수 있었던 ‘양민학살론’은 4·3 시기에 발생했던 양민 학살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부각시키게 된다. 이로써 국가 권력에 의한 대단위 학살을 거론하는데 있어 숙명론적 인식을 극복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사실 접근이 가능해졌다. 또한 희생자⁶²⁾로서, 유족으로서 4·3 경험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조직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양민 학살 담론을 구성하는 집단들은 자신들의 폭력적 역사는 논의의 중심에서 주변화시키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피해자’가 된 담론 집단은 국가를 상대로 위령사업을 위한 대단위의 물적지원을 요구했고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항쟁론’과 ‘폭동론’의 주요 세력들이 이전 시기와는 다른 진전된 국면을 전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결국은 양민 학살을 마지노선으로 공유하는 수준에서 ‘담론의 정치’를 통한 선택적인 4·3만을 소통시켰던 것이다. 양민 학살 담론 시기에는 또, 과거 학살 주체였던 국가가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위령공원’을

62) 4·3특별법 제 2조에서는 ‘희생자’를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 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행방불명된 자’는 2000년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가, ‘후유 장애가 남아있는 자’는 2004년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자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

조성하는데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의 대단위 물적 자원이 개입되는 위령 사업은 결국 대립하던 양측 담론이 극복해야 할 ‘폭력 역사’를 무화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화해와 상생 담론의 정치적 작용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국가 영역이 4·3 해결의 주요 주체로 위치하고 대단위의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화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는 하나, 이러한 담론적 상황에서도 폭력적이고 권위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담론적 질서’는 지속되게 된다. 그 점에서 4·3중앙위가 규정한 4·3 희생자는 바로 국가가 수용하고자 하는 4·3의 범주를 ‘합의’하여 제도로서 규정한 결과이다. 4·3 당시 불법적으로 감금됐던 소위 ‘4·3수형인’들의 경우도 그러한데, 그 당시 재판과 형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증언하고 있는 구술 사료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은 여전히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상충돼 버리는 현실과 ‘폭동론’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지배 담론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⁶³⁾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 진영의 조직화된 힘이 지난한 투쟁을 통해 4·3특별법 제정을 성사시켰고, 결국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4·3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지만, 분단국가의 국사(國史)는 그들이 강조했던 4·3을 선택적으로 수용해 버렸다.⁶⁴⁾ 국가의 이해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정호기, 2002, p.292) 국가가 수용 가능한 4·3의 역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됐던 반면, 국가가 배제하는 4·3의 역사는 거부됐다. 그것이 분단국가의 서사 전략과 배치된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배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3중앙위로 대표되는 국가가 규정한 4·3 희생자는 화해와 상생 담론이 수용하고자 하는 역사의 범주를 ‘합의’하여 제도로서 규정한 것이고, 희생자의 범주는 위로해야할 영혼

63) 4·3위원회는 2005년 3월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수형인 606명을 4·3 희생자로 결정했다.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에 ‘수형인’을 희생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범이 없었기 때문이다.

64) 김영범은 “흔히 ‘인권’과 짝을 이루어 강조되는 ‘평화’는 ‘항쟁’의 기억을 무화시키고 부정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미묘한 긴장이 새로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앞의 글, p.51) 4·3을 통한 ‘자주’와 ‘통일’의 담론은 주변화된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의 범주이자 담론의 범주인 것이다. 4.3 이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해 왔던 분단국가의 사상적 편향성은 이처럼 화해와 상생 담론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오늘날까지도 엄연한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재현시키게 되는데 이는 ‘담론적 질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결국, 담론의 정치적 작용은 담론 주체로 하여금 특정의 역사적 사실을 선택함으로써 지배 담론의 주체가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만을 차용하고, 유통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만을 집중적으로 유포시키게 된다. 때문에 ‘민중’, ‘희생자’, ‘폭력’ 등과 같은 언어들이 지배 담론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와 범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다음의 ‘합의’된 장치들이 생산됐던 담론적 배경도 이와 동일하다. 항쟁 세력의 주축이었던 이덕구가 현재까지 희생자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은 이처럼 1994년의 ‘합의’와 2002년의 ‘선정 기준’이라는 ‘담론적 질서’가 강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4.3으로 인해 사망했으나 도민의 정서를 고려, 도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사료되는 인사는 본 위령 대상에서 제외한다.(1990년대 중반, 사월제 공준위와 4.3민간인유족회의 합의 사항 중 일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을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정하게 된다.(2002년 4.3중앙위가 합의한 4.3 희생자 선정 기준의 일부)

이상의 논의에서 4.3담론의 형성과 담론의 정치적 속성에 대해 밝혔다. 여기에는 담론 주체가 ‘담론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담론의 정치’를 은밀하게 작동시킨다는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담론의 정치’를 통해 역사적 사실로서의 4.3이 담론 주체의 의도에 따라 ‘정사(正史)’로 표방되기도 하고 혹은 ‘오욕의 역사’로 낙인찍히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치’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창출했고, 그 점에서 선택적인 ‘수용/배제의 메커니즘’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담

론의 정치적 속성은 담론 주체들의 일치하는 전략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화해와 상생’을 주창하는 오늘날의 지배 담론 역시 ‘수용/거부 메커니즘’으로 인해 개별 역사 주체들의 경험과 기억을 담론 구조에 종속시켜 버리고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4·3 이후 오늘날까지 형성되어 온 각각의 4·3담론은 어떠한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됐는지를 밝혔다. 한국 사회의 구조화된 외적 영향력으로 인해 형성된 폭동 담론에서부터 저항 담론으로 형성되어 투쟁했던 항쟁 담론, 전략적인 ‘합의’를 통한 ‘양민학살론’과 이것의 발전된 형태인 화해와 상생 담론을 제시했다.

둘째, 각각의 지배 담론은 ‘담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담론의 정치’라는 필연적인 ‘선택/거부의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각 담론 별로 다면적인 4·3의 역사를 어떤 부분은 부각시키고 어떤 부분은 은폐시켰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혔다.

셋째, 오늘날 4·3의 담론적 지형이 어떻게 규정됐고,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했다. 화해와 상생 담론의 주체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평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로서의 4·3을 어떻게 동원시켜 나가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접근했다. 그 결과 담론의 정치적 작용을 통해 수난사적 맥락으로 재구성된 4·3만이 유통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를 위해 동원됐던 자료들이 담론 분석의 객관적 지점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담론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부분까지 접근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동일한 담론 집단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났던 현실을 구조적으로 세분화시켜 설명하지 못했다.

셋째, 거시적 문제들을 보다 작은 분석적 문제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에 한계를 보였다. 실제, 담론 구조 속에서는 형무소 문 앞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자신

의 죄목을 전해들을 수 있었던 ‘정기성’(제주 4·3 연구소, 2002)과 무장대의 죽창에 맞아 ‘팔도 오그라지고 밭도 데와져 부러던’ ‘김봉임’(김동만 외, 2004) 개인의 4·3 기억은 살아 있으나 집합될 수 없다. 때문에 무수한 ‘정기성’과 ‘김봉임’은 4·3의 경험을 공유한 개별 역사 주체들임에도 각 시기별로 전개됐던 담론 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담론적 재구성은 결국 개별 역사 주체들을 객체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역사적 사실로부터 주변화 시키고 만다. ‘조직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오늘날 지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해와 상생론’과 한국 사회의 지배 담론으로 위치해 있는 ‘폭동론’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분석 역시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광주 5·18과 민주화 운동의 경우는 그 담론적 지형이 전복된 상황이지만, 4·3의 경우는 폭동 담론이 지배적으로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화해와 상생 담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한계를 극복할 때 4·3 담론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 고 자 료

1.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79.
- _____, 「고등학교 국사」 하, 문교부,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82.
- _____, 「고등학교 국사」 하, 교육부,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0.
- _____, 「고등학교 국사」 하, 교육부,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6.
- 김경훈, “4·3 합동위령제 왜 무산 되었나”, 「월간제주」 170호, 1993.
- 김명식, “41주기 4·3 추모 토론회”, 「4·3자료집」, 제주4·3연구소, 1989.
- 김병언, “4·3은 제주도의 문제이면서 유족들의 뜻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미간행 원고, 1993.
- 김석범, “왜 ‘4·3’ 사건에 구애받는가”, 제주도 4·3사건 40주년 추도기념 강연회 ‘제주도 4·3사건이란 무엇인가’ 자료집, 1998.
- 김재호, “추도사”, 제5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자료집, 2002.
- 김한중 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2.
- 다량쉬굴4·3희생자대책위원회, “다량쉬굴 4·3 희생자 대책위원회 결성 및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다량쉬굴4·3희생자대책위원회 사업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자료집, 1992.
- 대한민국건국희생자제주도유족회, “제주4·3 희생자 선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간행 원고, 2002.
- 문무병, “41주기 4·3 추모 토론회”, 「4·3자료집」, 제주 4·3 연구소, 1989.
- 봉행위원회3인대표를제외한제주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전원, “제46주기 제주 4·3 희생자 봉행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서”, 미간행 원고, 1994.
- 숨비소리, “42주기 4월제 공준위 집행위 평가서”, 미간행 원고, 1990.
- 오균택, “4·3위령사업에 대한 나의 주장”, 미간행 원고, 1997.

우근민, “추도사”, 제52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자료집,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2000.

_____, “주제사”, 제54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위령제 자료집, 2002.

이용중, “제주대학살 진상규명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제언”, 미간행 원고,
1995.

이철승 외 14인, “제주4·3특별법 위헌 헌법 소원 청구를 내면서”, 「민족정론소
식」 4월호, 2000.

자유민주호국동지회, “제42회 현충일을 맞으면서”, 미간행 원고, 1997.

자유수호협의회, 「제주4·3사건자료집」, 자유수호협의회, 1997.

제경제주학생소모임협의회, “제주 민중항쟁 43주기를 맞이하며”, 「제주민중항
쟁 43주기 추모제」 자료집, 1991.

제향경우회 제주도지부·충의회 제주도지부, “4·3은 민중항쟁이 아니고 남로당의
무장폭동입니다. 따라서 4·3위령사업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간행
원고, 1997.

제주도문제연구소, “제주도민은 4·3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1989.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 「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명단」, 제주도4·3
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 1993.

_____, “‘94. 4. 29 사월제 공준위의 ‘제46주기 제주4·3 희생자 봉행 및 제반사
항에 대한 의견서’의 답변서”, 미간행 원고, 1994년 5월 30일 작성.

_____, “51만의 대화합을 위해 4·3 희생자 위령제를 공동 봉행한 우리들의 입
장”, 미간행 원고, 1994.

_____, “제주4·3사건민간인희생자위령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미간행 원고,
1995.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4·3제주민중항쟁 43주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사업 평가 및 전망”, 미간행 원고, 1991.

_____, “진정서”, 미간행 원고, 1992.

- _____, “제주4·3치유를 위한 도민토론회 자료집”, 미간행원고, 1995.
- _____,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 자료집”,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2005.
- _____, 「4·3유족회지」,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2005.
-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4·3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결의대회” 자료집, 미간행원고, 1996.
- 제주4·3사건왜곡을바로잡기위한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한 제주4·3사건 조사위(위원장 국무총리)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의 왜곡과 불법성에 대하여”, 「한국논단」 3월호, 한국논단사, 2004.
- 제주 4·3 연구소 편, 「4·3 연구회보」, 제주 4·3 연구소, 1989a.
- _____, 「4·3 자료집」, 제주 4·3 연구소, 1989b.
- _____, “4·3제주민중항쟁 43주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사업 평가 및 전망”, 미간행 원고, 1991.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위패봉안실 위패 진설 명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2005.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대구(목포)형무소 수형희생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2005.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외 2개 단체, “4·3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의·의결에 대한 성명서”, 미간행 원고, 2000.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연대회의, “4·3중앙위(심사소위)에 보내는 제주4·3연대의 입장”, 미간행 원고, 2001.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도서출판 선인, 2003.
- 제8기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96년 4·3운동에 대한 제총협 입장”, 미간행원고, 1996.
- 조승욱, “주제사”, 제주4·3사건희생자 51주년 범도민 위령제, 제주4·3사건희생자

- 위령사업범도민주진위원회, 1999.
- 한국논단 편집실, “제주4·3사건 진상은 이렇다 :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한 국무총리, 제주4·3사건 보고서의 왜곡과 불법성을 고발한다”, 「한국논단」 4월호, 한국논단사, 2004.
- 홍만기, “연구소 설립에 따른 실정보고서”, 미간행원고, 1989.
-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 “4·3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입장”, 41주기 4·3추모제 자료집, 1989.
- 42주기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 미간행원고, 1990.
- _____, “42주기 4·3행사평가 보고서”, 「4·3長征」 2, 제주 4·3 연구소, 1990.
- 45주기 공준위, “결성선언문”, 「제주4·3항쟁‘45주기’사월제」, 미간행원고, 1993.
- _____, “4·3합동위령제 공동 개최 제안”, 미간행 원고, 1993.
- 47주기 4·3공준위, “제47주기 제주4·3희생자 위령제 봉행을 위한 공동봉행위원회 결성 2차 제안의 건”, 미간행 원고, 1995



2. 논문, 기고문

- 강명구·박상훈, “상징의 정치와 담론 정치 :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31-1, 1997.
- 강창일, “‘제주4·3’ 운동의 의미와 전망”, 「제주 4·3의 이해」, 제주도중등사회과교육연구회, 2000.
- _____, “‘제주4·3’ 진상규명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5·18연구소, 2001.
- _____, “제주4·3희생자 선정 기준 논란”, 제주4·3희생자 선정 기준 논란에 따른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2.
- 고창훈, “4·3항쟁의 민족사적 의의와 현재적 과제”, 42주기 4월제 학술세미나

- 자료집, 미간행 원고, 1990.
- 고명철,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4·3소설의 새로운 지평 : 1987년 6월항쟁 이후 발표된 4·3소설을 중심으로”, 「제주작가」 제8호,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실천문학사, 2002
- 권귀숙, “제주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한국사회학회, 2001.
- _____, “기억의 재구성 과정”, 「한국사회학」 38-1, 한국사회학회, 2004.
- _____, “세대간 기억전수”, 「한국사회학」 38-5, 한국사회학회, 2004.
- 김광우, “언론의 제주4·3보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1994.
- 김동만, “4·3박물관 15 : 토벌공적비, 충혼비”, 「4·3과 역사」 26호, 제주 4·3 연구소, 1997.
- 김동윤,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 김동춘, “민간인학살 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전쟁과 인권 : 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자료집, 2000.
- 김명인, “한국전쟁과 문학 : 4·3문학의 역사와 쟁점”,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전후 : 오키나와전, 제주4·3사건, 한국전쟁」 자료집, 2005.
- 김석준, “제주지역의 선거(1948~1992) : 개괄적 검토와 재해석”, 「탐라문화」 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4·3 연구」,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비평사, 1999.
- 김수미, “玄基榮 小説 研究 : 역사와 현실에 대한 소설적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2004.
- 김순태, “4·3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제주4·3사건 공청회 ‘4·3사건 어떻게 풀 것인가’, 새정치국민회의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1998.
- 김영범,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動學”,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문학과지성사, 1998.

- _____,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6-3,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_____,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나간채 외, 역사비평사, 2004.
- 김영주, “국정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5.
- 김영훈, “4·3사건의 현재적 의미”, 「21세기 세계평화의 재검토와 평화의 확산」, 제주발전연구원, 2002.
- 김정, “해방직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 「역사연구」 7호, 2000.
- 김정훈, “한국전쟁과 담론 정치”, 「경제와 사회」 20호, 2000.
-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4·3 연구」,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비평사, 1999.
- 나간채, “문화운동 연구를 위하여”,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나간채 외, 역사비평사, 2004.
- 도승연, “사회 비판을 위한 계보학적 전략 : Foucault의 권력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9.
- 문부식, “‘광주’ 20년 후 : 역사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 「기억과 역사의 투쟁」 2002년 당대비평 특별호, 삼인, 2002.
- 문상석, “전쟁과 국가건설 연구 :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9.
-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51집, 문학과 지성사, 1997.
- 박찬식,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제2호,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실천문학사, 1999
- _____, “4·3증언에 나타난 제주민의 자치의식”,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 4·3과 5·18문화운동 기초연구」 자료집, 제주4·3연구소 외, 2004.

- 안정애, “4·3과 한국 정부의 역할 : 군부를 중심으로”, 다량쉬굴 유해 발굴 제 10주년 및 제주4·3 제54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4·3진상조사보고서, 어떻게 쓸 것인가?’, 제주4·3연구소, 2002.
- 양정심, “제주4·3항쟁에 대한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25호, 한국역사연구회, 1998.
- _____, “제주 4·3특별법과 양민학살 담론, 그것을 뛰어 넘어”, 『역사연구』 7호, 역사학연구소, 2000.
- 양한권, “‘제주도 4·3사건’의 배경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발표회 ‘제주도 현대사의 재조명’ 자료집, 제주사회문제협의회, 1988,
- 유철인, “4·3의 현재적 의미와 새로운 역사 만들기로서의 ‘4·3공원’”, 제주4·3치유를 위한 도민토론회 자료집, 제주4·3연구소, 1995.
- 윤지훈, “‘반공규율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담론과 통일운동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대학원, 2002.
- 이광일, “5·18민중항쟁, ‘과거청산’과 재구성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5·18연구소, 2004
- 이영권, “濟州道 有力者 集團의 政治社會的 性格:1945~1960”,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2000.
- 이재승, “인권과 과거사 청산의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제주4·3운동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이진경, “미셸 푸코와 담론이론 : 표상으로부터의 탈주”, 『철학의 탈주 : 근대의 경계를 넘어서』, 새길, 1996.
- 전해자, “권력의 재생산/변혁에 관한 담화이론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1990.
- 정경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분석 : 제 1차 교육과정~제 6차 교육과정”,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2002.
- 정석균, “제주도 폭동과 토벌작전 : 건국 전야의 공산당 최악의 반란 사건”, 『군사』 제 16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 정일준,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 역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5·18연구소, 2004
- 정주신, “6월항쟁의 정치사적 특징”,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5·18연구소, 2004.
-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2.
- 조성윤, “잃어버린 마을과 4·3의 현재성”,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4·3제50주년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학민사, 1998.
- _____, “제주4·3의 사회적 맥락과 공원조성에의 함의”,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2001.
- _____, “제주4·3기념의례의 방향”, 「문화와 현실」 제6호, 제주문화포럼, 2002.
- 최정운, “폭력과 언어의 정치 :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 5·18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1997.
- 최종렬, “뒤르케임의 「중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 대한 담론 이론적 해석”,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 최지선,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의 정치 : 일본군 ‘위안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2003.
- 한기한, “7차 국사교과서의 권력 관계 서술 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3.
- 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3-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황병주, “기억의 역사화 : 통합의 서사전략과 분열증적 기억들”, 「문학동네」 34호, 문학동네, 2003.
- 황상익, “의화사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4·3연구」,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비평사, 1999.

- 허상수, “제주4·3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제주4·3항쟁 진상규명 활동의 평가와 시행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3·1절 제83주년 및 3·1절 발포치사사건 55주년 공개토론회 자료집, 재경 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2002.
- 현혜경, “기억 투쟁과 4·3위령의례”,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나간채 외, 역사비평사, 2004.
- _____, “4·3과 굿의 재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 4·3과 5·18 문화운동 기초 연구’, 제주4·3연구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3. 단행본

- 고성준 외,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5.
- 고재우, 「濟州 4·3 暴動의 眞相은 이렇다」, 백록출판사, 1998.
- 고충석 외,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 정립과 실천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0.
- 김동만 외,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도서출판 각, 2004.
- 김병언, 「4·3의 濁流를 歷史의 大河로」, 디딤돌, 1994.
- 김종엽, 「에밀 뒤르켐을 위하여 : 여성, 축제, 인종, 방법」, 새물결출판사, 2001.
- 김진균,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1·2, 문학과 학사, 2003.
- 김한중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05.
- 나간채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대림인쇄사, 1995.
- 송병헌 외, 「한국자유민주주의 전개와 성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서출

- 판 오름, 2004.
-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1988.
-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윤평중, 「담론이론의 사회철학」, 문예출판사, 1988.
- 이영권, 「왜곡과 미화를 넘어 제주역사 다시보기」, 신서원, 2005.
- 이영환 편,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함께읽는책, 2003.
-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 정해구 외,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서출판 오름, 2004.
- 제주 4·3 연구소 편, 「이제사 말함수다」 1, 한울, 1989c.
- _____, 「이제사 말함수다」 2, 한울, 1989d.
- _____,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 조남수, 「四·三眞相」, 도서출판 월간 관광제주, 1988.
-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2003.
- _____,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2004.
- 한상진·오생근, 「미셸 푸코론」, 한울, 1998.
- Louis Althusser 저·이진수 역 :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백의, 1991.
- Pieter Bourke 저·곽차섭 역 : 「역사학과 사회이론」, 문학과지성사, 1994.
- Michel Foucault 저·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 _____, 「담론의 질서」, 서강대학교출판부, 2002.
- _____.이규현 역 : 「성의 역사 1 : 앎의 의지」, 나남, 2004.
- Norman Fairclough 저·이원표 역 :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2004.
- Stuart Hall 저·임영호 역 :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 Diane Macdonell 저·임상훈 역 :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2002.
- Karl Marx-Engels, Friedrich 저·박재희 역 : 「독일이데올로기 I」, 청년사, 2001.
- Sars Mills 저·김부용 역 : 「담론」, 인간사랑, 2001.
- Skocpol, Theda. 편·박영신 외 역 :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한국사회학연구소, 민영사, 1991.



Abstract

Form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Jeju 4·3 and Political Action

Koh, Sung Ma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find out under what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and by whom the discourse on the Jeju 4·3 has been formed and what political action has been taken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discourse.

From in Korean society's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dominated by the far right anticommunist system to today when 'reconciliation and mutual prosperity' are emphasized via the democratization period how the 4·3 has been discoursed systematically in each situation since it was suppressed? In this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organizations through the First Memorial Ceremony of the 4·3 in 1989, 'the Joint Memorial Service' in 1994,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f the 4·3 in 1999, and the President's apology in 2003 a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transitional point and the discourse of the 4·3 is divided into 'revolt theory' and 'resistance theory', 'killings of the innocent populace theory' and

'reconciliation and mutual prosperity theory'.

While each April 3 discourse developed in the respective situation can be approached through social expression way or symbolic structure, 'the central operating body', 'politics', and 'effect' of discourse are grasped and analysis is done in earnest by means of expressed materials in each discourse.

As a result the central operating body develops discourse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its intension and strategy. Fighting and compromise have a specific 'effect' on practical power relations in reality and then grow and reproduce it. In case of a historical fact 'politics of discourse' is operated as a strategy to maximize 'effect of discourse'. When this happens, selected 'facts' and excluded(refused) 'facts' exist inevitably. In other words the 4·3 can exist as historical facts highlighted after selected or excluded after refus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action taken by a central operating body of discourse although it is one and identical objective phenomenon.

From this respect the analysis on the April 3 discourse is a meaningful work because it attempts to secure objectivity of historical facts by tracking down the historical facts selected or excluded due to political action of discourse and breaking up hierarchical relationship in discourse structure.